



정책연구
2018-12

청년층 노동시장정책 심층평가 : 고용장려금사업

이성희 · 유동훈

목 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이성희) 1
제1절 연구 목적	1
제2절 연구 방법	2
제3절 청년층 고용지원제도의 고용효과 선행연구	4
1. 청년층 채용에 대한 조세감면 지원의 고용효과	4
2. 청년층 대상 고용지원금의 고용효과	5
제2장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운영현황	(이성희) 9
제1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개요 및 추진체계	9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추진 경과	9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추진체계	11
3.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	14
4.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 요건	16
5.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 내용	17
6. 장려금 지급신청 및 지급	20
제2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운영 현황	21
제3장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사업체 특성 분석 (유동훈)	31
제1절 참여사업체 분석 개요	31

제2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사업체 특성 분석 결과	33
1. 재무재표 현황	33
2. 연구개발비	43
3. 시범사업(2017년)·본사업(2018년) 참여사업장 비교	48
4.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사업장	57
5.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 전·후 고용변화	62
6.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 성별 종사자 수 비교	64

제4장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현장진단을 위한 심층면접

결과(질적 분석)	(이성희) 65
제1절 청년고용장려금사업 관련 FGI 추진 현황	65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FGI 개요	65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FGI 주요 질문	67
제2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FGI를 통해 본 고용효과	68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신청 현황 추이	68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의 청년고용 촉진효과	69
3. 스타트업과 중견기업 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고용효과 차이	72
4.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연계효과	75
제3절 청년고용장려금사업 운영과정의 애로사항 분석	77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에 대한 인지도	77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준비서류 및 절차 관련 애로사항	79
3.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관련 지침 변경	81
제4절 청년고용장려금사업 운영개선 제안사항	86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시기에 따른 지원금액 기준의 통일	86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시 기업 현장 확인 절차 강화 필요성	87
3. 정부 고용지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일모아사업 신고 대상 확대	89

4.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담당자 정기 교육프로그램 운영 필요	90
---	----

제5장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이성희 · 유동훈) 92
------------	----------------------

제1절 청년고용장려금사업 운영 현황 및 사업체 특성	92
------------------------------------	----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운영 현황	92
--------------------------	----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사업체 특성	93
-------------------------------	----

제2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	96
-------------------------------------	----

1. R&D 투자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대상 지원 확대 검토	96
---	----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지원 중소기업 기준 조정 필요성	97
--	----

3.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시기에 따른 지원금액 기준의 통일 ...	98
--	----

4.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시 기업 현장 확인 절차 강화	98
--	----

5. 정부 고용지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일모아사업’ 신고 대상 확대	99
---	----

6.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담당자 정기 교육프로그램 운영 필요	99
---	----

참고문헌	101
------------	-----

표 목 차

<표 2-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시행개선 내용	11
<표 2- 2>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 사용 근로자기준 (제12조제1항 관련)	15
<표 2- 3>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 고용요건	16
<표 2- 4> 기업규모에 따른 청년 추가채용 지원 예시	17
<표 2- 5> 고용위기지역의 청년 추가채용 지원 예시	18
<표 2- 6> 2018. 1. 1.~2018. 3. 14. 기간 내 청년 추가채용 지원 예시	19
<표 2- 7> 월별 지급현황	21
<표 2- 8>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규모별 지급현황	23
<표 2- 9>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규모별 지급현황	24
<표 2-10>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지역별 지급현황	25
<표 2-11>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고용위기지역 지급현황	26
<표 2-12>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연령별 지급현황	27
<표 2-13>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성별 지급현황	28
<표 2-14>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성장유망업종 지급현황	29
<표 2-15>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비성장유망업종 지급현황	30
<표 3-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월별 지급현황	32
<표 3-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업체 2018년 고용현황	34
<표 3- 3>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업체 고용 및 재무제표 현황 ...	35
<표 3- 4> 산업 분류	38
<표 3- 5>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업체 고용 및 재무제표 현황 - 제조업	38

<표 3- 6>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업체 고용 및 재무제표 현황 - 운수 및 창고업	40
<표 3- 7>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업체 고용 및 재무제표 현황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0
<표 3- 8>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업체 고용 및 재무제표 현황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42
<표 3- 9> 2016년 연구개발비 비중 - 전 산업	43
<표 3-10> 2017년 연구개발비 비중 - 전 산업	43
<표 3-11> 연구개발 투자 사업체 비중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	44
<표 3-12> 2016년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46
<표 3-13> 2017년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46
<표 3-14> 2016년 연구개발 투자 사업체 비중	47
<표 3-15> 2017년 연구개발 투자 사업체 비중	48
<표 3-16>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2017년 기준)	49
<표 3-17> 시범사업참여업체(2017년 기준)	49
<표 3-18> 2018년 1~5월 본사업참여업체(2017년 기준)	50
<표 3-19> 2018년 6월 이후 본사업참여업체(2017년 기준)	51
<표 3-20>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 약정임금 (당해 기준)	52
<표 3-21>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인원 고용보험 이탈률 (당해 기준)	52
<표 3-22>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인원 퇴사비율 - 제조업	53
<표 3-23>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인원 퇴사비율 - 운수 및 창고업	54
<표 3-24>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인원 퇴사비율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4
<표 3-25>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인원 퇴사비율 - 시설관리사업	54

<표 3-26>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인원 퇴사비율 - 교육서비스업	54
<표 3-27> 약정임금 - 제조업	55
<표 3-28> 약정임금 - 운수 및 창고업	56
<표 3-29> 약정임금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6
<표 3-30> 약정임금 - 시설관리사업	56
<표 3-31> 약정임금-교육서비스업	56
<표 3-32>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2018년 7~9월 기준) ...	57
<표 3-33>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업체 비교	58
<표 3-34>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업체 비교 - 제조업	59
<표 3-35>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업체 비교 - 도매 및 소매업	59
<표 3-36>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업체 비교 - 정보통신업	60
<표 3-37>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업체 비교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0
<표 3-38>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업체 비교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61
<표 3-39>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고용변화	63
<표 3-40>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 여성종사자 비율	64
<표 4-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FGI 대상	66

그림목차

[그림 2-1]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신청 및 지급절차(시범사업)	12
[그림 2-2]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신청 및 지급절차 (2018년 본사업)	13
[그림 3-1]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44
[그림 3-2]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	45

요 약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실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기업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운영 현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월별 지급 현황이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6월부터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범위가 2017년 시범사업부터 2018년 5월까지의 성장유망업종으로 제한되다가, 2018년 6월부터 모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확대되면서 신청기업이 크게 증가한 결과이다.

업종별 사업 참여 특성을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 업종 참여사업장의 수가 크게 증가했고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참여 비중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최초 설립 취지에 따라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성장유망업종을 대상으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같이 성장가능성이 높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업체에 대한 지원이 많았을 것이지만, 2018년

6월부터 성장유망업종에 대한 지원요건 제한이 풀린 이후 다른 업종에 대한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 업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 성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보다 남성 채용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청년 채용자가 20~34세의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사업체 특성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업체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변화에 따라 표본을 나누어 분석했다. 전체 표본을 2017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업체 중 시범사업 참여집단과 2018년 1~5월 본사업에 참여한 업체, 마지막으로 2018년 6월 이후 본사업 참여업체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봤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기업의 종사자 수를 비교해 보면 2018년 1~5월 본사업지원업체의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범사업 참여업체의 종사자 수가 그다음으로 나타났다. 2018년 1~5월 본사업의 경우 시범사업 지원업체에서 제한된 성장유망업종에 더해 전·후방 산업업종이 추가되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업체들이 사업에 참여했을 것이라 추측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2018년 6월 이후 참여업체의 규모가 가장 작은 것은 성장유망업종 제한이 사라져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체가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재무제표상 특징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지표에서 2017년 시범사업 때보다 2018년 본사업 때의 참여업체가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시범사업 참여업체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 비중이 높은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의 업종별로 매

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살펴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업체가 그렇지 않은 사업체보다 연구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연계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업체 중 청년내일채움공제에도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두 사업 모두에 참여하는 업체가 상시근로자 수, 사업 내 추가고용, 지원금액의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업 모두를 지원받는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클 가능성이 있고 이는 추가적인 고용여력이 높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인원 평균 약정임금을 입사 당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본사업에 참여한 인원의 평균임금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18년 6월 이후 피고용자 임금이 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참여에 따른 청년 근로자의 퇴직률을 확인해 보면 2017년 시범사업 참여인원 중 12.01%,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참여인원 중 6.16%, 6월 이후 참여인원 중 6.37%가 2018년 9월 기준으로 퇴직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업종별로 확인해 보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 퇴사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의 고용효과는 사업 시행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간접적인 고용효과를 살펴보았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고용변화 평균값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을 통한 추가고용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고용의 변화를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해 보았다. 분석 결과 시범사업 참여업체와 2018년 5월까지의 본사업참여업체의 경우 사업 내 추가고용의 수가 지난 5년 평균 고용변화보다 적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2018년 6월 이후 본사업 참여업체의 추가고용 인원의 수가 지난 5년 평균 고용변화보다 두 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해석에 주의를 요하는데 먼저 구조적인 계량 분석이 아니므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로 인한 고용변화 차이가 유의미한지에 대한 해석을 펼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차후 추가적인 고용지표가 확보되면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가. R&D 투자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대상 지원 확대 검토

본 연구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기업과 비참여기업 간 비교분석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 사업장들이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비중이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업체들의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특히 상대적으로 연구의 비중이 높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경우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연구개발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을 성장유망업종으로 제한했던 시범사업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다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의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중에서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높은 기업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지원 중소기업 기준 조정 필요성

본 연구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한 FGI에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으로 인한 채용 증가효과는 초임 수준이 낮고 경영상황이 불안정한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에

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초임 수준이 높고, 경영이 안정돼 있는 중견 기업에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에 따른 채용 증가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이 청년들의 중소기업 채용촉진이라는 애초의 목표에 집중하고 제한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이나, 성장이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반면에 지불여력이 높고, 경영이 안정돼 있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이 없더라도 채용에 어려움이 없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시기에 따른 지원금액 기준의 통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은 지원금액 기준 변경으로 2018년 3월 15일 이전 신청기업은 매월기준 55만 5,000원을 지원받는 반면, 2018년 3월 15일 이후 신청기업은 매월 기준 75만 원을 수령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지원금액의 차이는 같은 중소기업 내에서도 신청 시기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 중소기업간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지원금액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금액을 2018년 3월 15일 이후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시 기업 현장 확인 절차 강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지침에 따르면 고용센터는 중소기업에서 장려금을 신청한 사업주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사업기간 중 1회 이상의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센터 상담사들의 업무과중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현장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예산이 증액되고 지원범위는 확대되고 있지만, 고용센터의 담당 실무자가 증원이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현장 확인이 더 어려워 질 수도 있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은 중소기업에게 현금지원을 하는 것만큼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고용센터 상담사들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을 신청한 중소기업 현장을 반드시 찾아가서 현장 점검을 하도록 운영지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 정부 고용지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일모아사업’ 신고대상 확대

고용노동부는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서 두 개 이상의 정부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으려는 기업은 청년추가고용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러한 정부 고용지원금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고용지원금 지급 시 이를 ‘일모아사업’에 등재하도록 해서 정부의 고용지원금 중복지원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고용지원금은 일모아 시스템에 연계되지 않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알려주지 않으면 고용센터 상담사들이 중복지원 현황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고용지원금 중복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일모아사업’을 개편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지급하는 고용지원금은 모두 등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중복지원 여부를 걸러내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담당자 정기 교육프로그램 운영 필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은 2017년 시범사업에 이어 2018년에 본 사업 시행되고, 2018년 6월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투입해 사업이 확대되면서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금 지급 기준 등 관련 지침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고용센터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을 맡은 상담사들이 지침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복잡한 지침 내용으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고용부의 지침 체계화와 기준 통일과 함께 이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을 담당하는 고용센터 상담사들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최근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고용장려금사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정부 예산 투입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정책이 실제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참여 대상(중소기업, 청년) 선정기준, 장려금 지원 및 전달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정책 점검과 개선방안이 신속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은 2017년 청년들이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시범사업에서는 성장유망업종¹⁾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해당 중소기업에 근로자 1명분의 임금을 1년에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3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었다(사업주 지원: 2017~2020년까지 한시 사업).

1) 청년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성장유망업종: 신소재, IOT가전, AR·VR, 차세대 반도체, 로봇, 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 문화·콘텐츠 등 49개 업종에 73만 개 중소기업이 해당됨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은 2017년 시범사업 실시에 이어 2018년에는 본격 사업을 시작하여 청년 1만 명 취업지원을 목표로 1,930억 원을 투입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018년 6월부터는 추가경정 예산을 투입해 사업대상을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고용장려금도 1인당 90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청년층 고용장려금사업을 통한 취업 목표도 9만 명으로 증원하였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신청 대상 기업도 기존의 성장유망업종 해당 중소기업에서 상시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고용장려금 지원액도 기존에 3명 이상부터 2,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던 것을 기업 규모에 따라 청년을 1명 이상 채용하면 9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증액하였다.

고용부는 청년고용장려금 사업간 연계를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에서 해당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2018. 2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사업 시행의 정책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층 대상 고용장려금사업 운영현황 분석과 현장 시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운영상의 장애요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7년 시범사업과 2018년 본격사업의 운영현황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정책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방법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은 괜찮은 중소기업에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

하는 사업으로 출범했다. 이러한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업이 운영되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이 중소기업에 청년채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 사업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의 고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였다. 2017년과 2018년 9월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사업체 수 및 신청자 수, 신청기업 현황, 추가고용장려금사업으로 채용한 청년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해 기초통계를 분석하였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의 고용효과 분석을 위해 2017년 시범사업과 2018년 본사업 시행 이후로 나누어서 고용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2018년 본사업 시행 이후에 6월부터 사업 참여대상이 확대(중견기업 포함, 장려금 지원액 1인당 900만원으로 증액) 된 것을 감안하여 2018년 1월~5월과 6월 이후로 구분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기업의 기업 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2017년 시범사업과 2018년 본사업의 청년채용 증가효과와 채용된 청년들의 임금수준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의 운영현황 분석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한 기업의 인사담당자와 채용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을 집행하는 고용센터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운영현황과 실적에 대한 평가, 사업 운영과정의 애로사항과 운영개선방안에 대해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의 운영현황에 대한 계량분석과 심층 인터뷰 등 질적인 분석을 토대로 청년고용장려금사업의 운영현황에 대한 점검과 함께 향후 고용효과 증대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3절 청년층 고용지원제도의 고용효과 선행연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은 청년들이 성장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 채용을 늘린 근로자 수에 비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인건비 지원을 목적으로 기업에 직접 지원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존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과 같이 청년층 근로자들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며 적립예금을 일정기간 후 청년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과는 차별성을 띄고 있다. 기존의 사업이 근로자들의 중소기업 근속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동기 부여의 목적을 지니고 있어서 상호 보완적인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은 2017년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사업의 고용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아서 본 절에서는 비슷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사업의 고용효과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1. 청년층 채용에 대한 조세감면 지원의 고용효과

지금까지 고용확대를 위한 임금지원제도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먼저 급여세 지원을 통해 고용비용을 줄여서 고용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런 제도의 경우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특별한 조건 없이 지급이 가능하다. 지원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고용비용의 최대 10%까지 지원가능하고 제도에 따라 일시적이거나 혹은 영구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제도의 적용과 그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먼저 2007년 스웨덴의 청년층(18세~24세)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세(11%)를 살펴볼 수 있는데 Egebark and Kaunitz(2014)에 따르면 이런 근로소득세 감소의 고용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통제집단에 대한 고용기대 확률은 비교집단과 비교했을 때 약 2%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특히 대체효과를 감안할 경우 청년층의 종합적인 고용증가는 약 1%로 추정된다.

『Canadian Youth Hires Programme』의 경우 위와는 다르게 좀 더 긍정적인 정책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제도는 1999년에서 2000년까지 청년층(18세~24세)을 고용하는 데 소용되는 비용의 약 3.5%를 일시적으로 지원했는데 Webb et al.(2012)에 따르면 정책대상 집단의 고용기간을 비교집단(25세~29세)과 비교했을 때 3% 정도 더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체효과, 즉 비교집단의 고용기간이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세금 감면의 효과는 2.5% 정도로 추정된다.

터키에서 2008년 실시한 『The Employment Package』의 경우 지난 6개월 동안 미취업 상태였던 여성과 청년층(18세~29세)에 대한 높은 수준의 처방으로 실질적으로 증가한 고용에 대해 고용주 급여세를 5년 동안 최대 15%까지 줄이는 형태로 적용됐다. 이 제도는 총 2년 동안 실시됐는데 최초 1년간의 효과를 분석한 Baraza(2011)의 경우 청년남성의 고용확률이 4%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고 2년 동안의 프로그램 적용효과를 분석한 Ayhan(2013)의 경우 25세~29세 통제집단의 고용률이 이들보다 약간 나이가 많은 이들로 구성된 비교집단과 비교했을 시 1.3%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2. 청년층 대상 고용지원금의 고용효과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는 사회적 약자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금을 들 수 있다. 이런 종류의 고용지원금은 그 목적과 방식에 따라 몇 가지 다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크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층을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지원금제도와 단기적인 직장경

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인 노동시장 활성화의 목적을 지닌 지원금제도의 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런 제도의 특징은 청년층 임금의 상당부분(40% 이상)을 1~2년 동안 지원하며 상대적으로 긴 지원 기간은 대상 구직자의 직업 숙련도를 높이고 장기적인 고용기회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목적을 가진다.

Caliendo et al.(2011)은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에 대한 고용지원과 청년층(18세~24세)을 대상으로 한 임금지원제도를 분석해 두 제도 모두 매우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고용효과를 보여준다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임금지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높은 효과를 보여준다고 결론지었다.

Eppel and Mahringer(2013)은 오스트리아에서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세전임금의 60%까지 2년 동안 지원 가능하게 만든 제도를 분석했다. 이 제도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5년 후 자료를 기준으로 고용현황을 분석했으며 청년층의 경우 약 10% 정도 길게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저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제도의 수혜를 받아 고용된 근로자의 약 60%는 이런 임금지원을 받지 않았어도 취업에 성공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려 사중손실의 위험을 경고했다.

이런 형태의 임금지원은 동유럽국가에서도 적용됐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아직 많지 않은 실정이다. O'Leary(1998)는 1996년 헝가리에서 적용된 임금지원제도를 분석했는데 이는 최소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이들에게 최대 1년 동안 50%의 고용비용을 지원해주며 사업체의 경우 임금지원이 지속되는 동안 그리고 임금지원이 끝난 후로도 임금지원 지속기간만큼의 기간 동안은 근로자 해고 시 불이익을 받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참여청년층(16세~20세)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비교집단과 고용확률을 비교한 결과 이들보다 약 15% 높은 확률로 고용에 성공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중구조의 노동시장에서 임금지원제도의 효과 역시 중요한 주제이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호받는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

이 혼재해 있는 노동시장에서 기간에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에 대한 임금 지원은 청년근로자들의 노동의 질과 고용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2002년 22세 이하의 저숙련 인력을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고용하는 것에 대한 고용지원을 실시했다. 고용주는 최초 2년 동안 최저임금근로자 고용비용의 14%를, 그리고 마지막 1년 동안 고용비용의 7%를 지원받고 3년의 고용기간 동안 (청년)피고용자를 해고할 수 없다. Roger and Zamora(2011)은 비슷한 특성을 가진 청년들 중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제집단과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비교집단이 영구직으로 고용될 확률을 비교했는데 큰 차이를 찾아내지 못했다. 저자들은 임금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체 중 절반가량만 실제로 이런 지원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보아 피고용자에게 주어진 보호권한이 너무 큰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비슷한 예로 스페인에서는 1997년부터 2년 동안 30세 이하의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고용하는 것에 대한 고용세 감소를 추진한 적이 있었는데, 이는 총 고용비용의 약 7.5%를 지원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며 사업체의 경우 임금지원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피고용자를 해고할 수 없었다. Kugler et al.(2002)는 임금지원제도가 청년층과 여성이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영구직)으로 고용될 확률이 각각 2.5%와 6% 증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추정했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로 실업상태나 계약직상태의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러한 고용확대를 위한 고용지원금제도의 실제 효과는 경제·사회적인 구조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고용탄력성이 높은 국가의 경우 고용지원제도의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즉, 사회보장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비공식 고용의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이런 지원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장기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임금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지원 금액이 많고 지원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1~2년) 정책이 청년

층의 장기적인 고용확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임금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업체들이 쉽게 인력을 해고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임금지원 수혜를 받는 청년들의 장기적인 근속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중손실을 막기 위해서 대상층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 또한 도출했다.

마지막으로 이중구조 노동시장에서 임금지원 프로그램이 효과를 가지려면 임금지원과 함께 사업주가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없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용주 입장에서 보자면 저숙련 청년층을 정규직 계약으로 고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임금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제 2 장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운영현황

제1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개요 및 추진체계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추진 경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원사업은 청년(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은 2017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시범사업 당시에는 청년들이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해당 중소기업에 근로자 1명분의 임금을 1년에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3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었다.(사업주 지원: 2017~2020년까지 한시사업)

* 성장유망업종: 신소재, IOT가전, AR·VR, 차세대 반도체, 로봇, 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 문화·콘텐츠 등 499개 업종에 73만 개 중소기업이 해당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범사업은 2017년 추경예산으로 48억을 투입하여 3,000명 지원목표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389명 신청, 17.2억 원이 집

행되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은 2018년에 본사업으로 확대되어 청년 1만 명 취업지원을 목표로 1,930억 원을 투입하게 되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은 2018. 6월부터 추가경정 예산을 투입해 사업대상을 5인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하였고, 고용장려금도 1인 당 90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청년층 고용장려금사업을 통한 취업 목표도 9만 명으로 증원하였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신청 대상 기업은 기존의 성장유망업종 해당 중소기업에서 상시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하였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제조업은 500인 이하, 건설업, 광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은 300인 이하, 기타 산업(서비스업 포함) 100인 이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액도 기존에 3명 이상부터 2,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던 것을 기업 규모에 따라 청년 1명 이상 채용 시 9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증액하였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을 통한 청 채용 목표도 기존의 1만 명에서 9만 명으로 확대하였다.

고용부는 청년고용장려금사업 간 연계를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에서 해당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²⁾(2018. 2월)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인건비 지원을 목적으로 기업에 지원을 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청년 취업지원 및 장기근속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이는 중복지원에 해당되지 않음(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서도 중소기업에 2년간 지급되는 지원금 300만 원이 있으나, 이는 인건비 지원이 아닌 운영지원금임)

〈표 2-1〉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시행개선 내용

구분	시범사업(2017)	본사업(2018. 1~5월)	본사업(2018. 6월 이후)
대상 업종	성장유망업종 (233개 업종, 18만 개 기업)	성장유망업종 확대 (지식서비스산업 등 추가) + 전후방산업 추가 (499개 업종, 73만 개 기업)	전체 업종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성장유망업종, 청년창업기업은 5인 미만 포함)
기업 규모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추가
지원 방식	3명 고용 시 1명 지원	3명 이상 고용 시 비례 지원 (예) 4인 고용 시 1.33명	(30인 미만) 1명 고용 시부터 지원 (30~99인) 2인 고용 시부터 지원 (100인 이상) 3인 고용 시부터 지원
지원 금액	3년간 연 2,000만 원 (1인당 667만 원)	좌동	1인당 연 900만 원 고용위기지역* 500만 원 추가
지원 요건	-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희망 시 가입 보장)
한도	중소기업당 3명	기업당 90명 (2+1기준 30명)	좌동

*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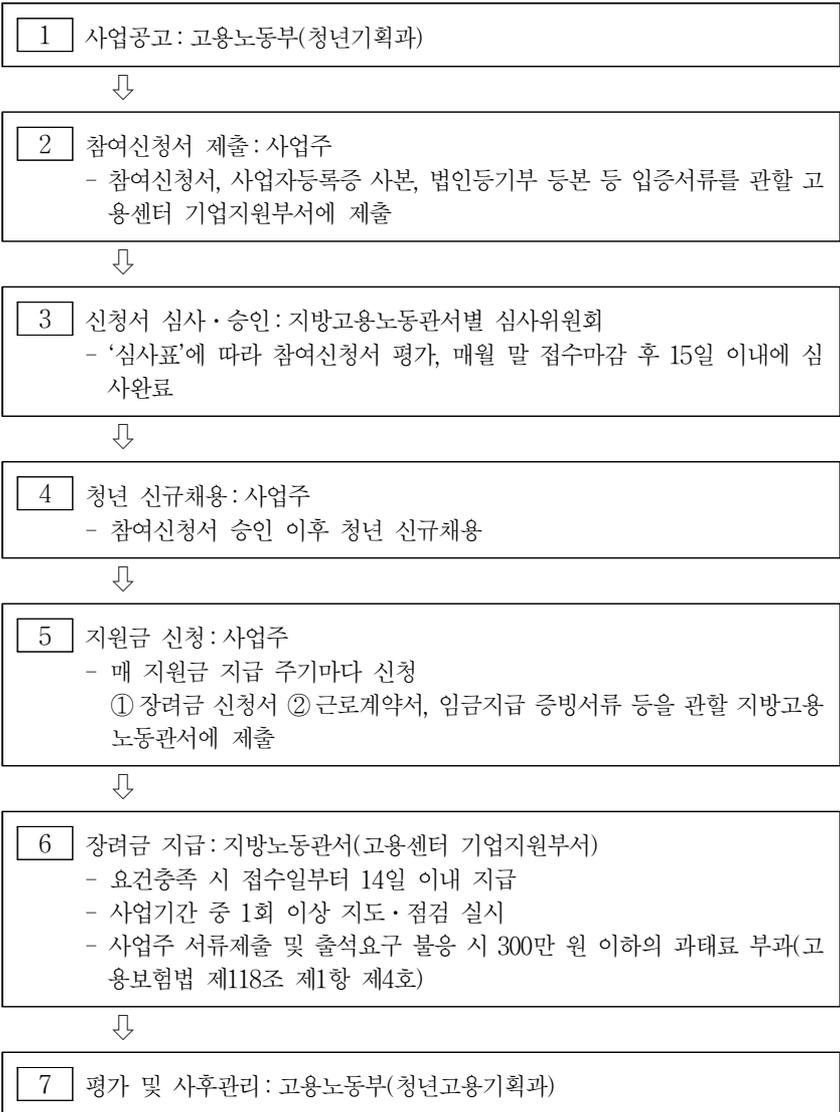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원사업 추진체계는 2017년 시범사업에서는 사업 공고 후 참여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심사 및 승인절차를 거쳐 채용 및 지원금신청이 이뤄지는 7단계 절차를 거쳐 시행되었다.

이러한 시범사업 추진체계는 2018년 본사업을 시행하면서 성장유망기업 여부를 심사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없애면서,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하고 바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절차로 간소화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다.

12 청년층 노동시장정책 심층평가 : 고용장려금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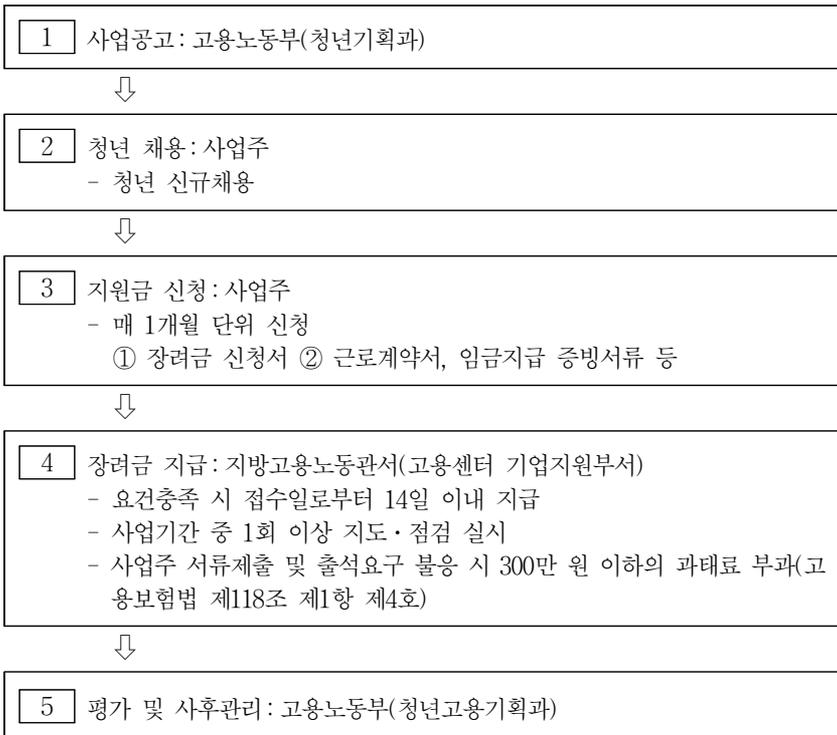
2018년 6월 이후에는 지원금 신청부터 청년고용장려금의 지급 및 평가까지 크게 다섯개 절차로 진행된다.

(그림 2-1)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신청 및 지급절차(시범사업)



먼저, 고용노동부의 사업공고를 토대로 사업주가 청년 구직자를 신규 채용하고, 사업주는 이를 매 1개월 단위로 장려금 신청서와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지원금을 신청하게 된다. 지역의 고용센터나 기업지원부서와 같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장려금을 신청한 사업주가 요건을 충족할 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사업 기간 중 1회 이상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만약 사업주가 서류제출 및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4호)할 수 있다. 이후에는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에서 이를 평가하고 사후관리하는 책임을 지닌다.

[그림 2-2]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신청 및 지급절차(2018년 본사업)



3.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017년 말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및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2018년도 고용보험 신규성립의 경우에는 성립일 기준)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사업주 단위)이라도 ① 성장유망업종(2017년 및 2018. 1. 16.자 동 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업종으로 지식서비스산업 등을 포함)이거나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법)』에 따른 벤처기업(벤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 ③ 지식서비스산업, ④ 문화콘텐츠산업, ⑤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⑥ 중소기업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⑦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⑧ 청년창업기업 중 사회적 기업이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8가지 업종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먼저 소비·향락업 등의 업종에서는 ①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틀업, 무도장운영업 등)이나 ②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

〈표 2-2〉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 사용 근로자기준(제12조제1항 관련)

산업분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00명 이하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해당하는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가 및 공공기관 등 인건비를 포함해 기관 운영 전체 또는 대부분의 운영예산을 자체 수익에 의하지 않고 국가 등의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인건비)을 받고 있지 않은 대상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받은 기업(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고용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이거나, 청년고용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

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4.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 요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장려금 수령이 가능하다.

먼저, 기업 규모에 따라 청년을 1명~3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업규모는 2017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나타내며, 2018년 신규성립 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적용한다.

또한,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우선, “2017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기업규모별 최저 고용요건 인원”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기업 전체 근로자 수(피보험자 수)가 증가하거나, 2018년 고용보험 신규 성립사업장인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기준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기업규모별 최저 고용요건” 이상 청년 정규직을 추가 채용하여 기업전체 근로자 수(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장려금 지급 주기(매월 단위)마다 기업 전체 근로자 수(피보험자 수) 증가여부를 확인하여 장려금 지급여부를 판단한다.

신규채용 청년은 2018. 1. 1. 이후 만 15세~34세 연령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인턴이나 기간제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규채

〈표 2-3〉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 고용요건

기업 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주: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적용하는데,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함.

용 청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리고 최저 고용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한 후에는 6개월 이내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만 장려금을 지급한다 (시행지침 시행일 이전 채용자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 신청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음).

신규채용된 청년에 대해 사회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준수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월 임금이 1,573,770원(주 40시간 월 최저임금 수준) 이상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월 임금이 75만 원 이상 1,573,77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 임금의 1/3을 지원하게 된다(2018. 3. 15. 이후 청년 신규채용자부터 적용된다).

또한, 청년을 신규채용한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1개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또는 월임금이 75만원 미만인 근로자),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 도는 인척을 채용했거나, 외국인을 채용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5.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 내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업 당 최대 9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최저고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청년 추가채용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는데 이는 '18.3.15.이후 청년 신규채용자부터 적용된다.

〈표 2-4〉 기업규모에 따른 청년 추가채용 지원 예시

	1명 고용	2명 고용	3명 고용	4명 고용	...
30인 미만	900만 원	1,800만 원	2,700만 원	3,600만 원	...
30~99인	×	1,800만 원	2,700만 원	3,600만 원	...
100인 이상	×	×	2,700만 원	3,600만 원	...

여기서 매월 단위로 “지원인원 × 75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대상 청년의 입사나 이직으로 지원 기간 해당월의 근로한 날이 적을 경우, 또는 월 중간에 채용된 경우에는 월 지원액(75만 원)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원대상 청년의 월 임금이 ‘75만 원 이상 1,573,77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인원 × 지급임금 × 1/3”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개별근로자별로 지원액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월 임금이 7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9호, 36호)』에 따른 지역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연 최대 1,400만 원을 지원하고, 이는 고시에 따른 지정 기간 안에 신규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영암군으로 총 8곳이다.

여기에서 매월 단위로 “지원인원 × 1,166,660원”을 지원하며 지원대상 청년의 입사나 이직으로 지원기간 해당월의 근로한 날이 적을 경우에는 지원액(1,166,660원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원대상 청년의 월 임금이 75만 원 이상 1,573,77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인원×지급임금 × 1/3×1.55”를 지원한다. 지원대상 개별근로자별로 지원액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월 임금이 7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 1. 1.~2018. 3. 14. 기간 내 채용자에 대해서는 1인당 6,666,660원을 지원하고, 월 지원액은 555,550원으로 한다. 6,666,660원은 제도개편 전 지원액 연 2,000만 원을 고용인원 수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이다.

<표 2-5> 고용위기지역지역의 청년 추가채용 지원 예시

	1명 고용	2명 고용	3명 고용	4명 고용	...
30인 미만	1,400만 원	2,800만 원	4,200만 원	5,600만 원	...
30~99인	×	2,800만 원	4,200만 원	5,600만 원	...
100인 이상	×	×	4,200만 원	5,600만 원	...

〈표 2-6〉 2018. 1. 1.~2018. 3. 14. 기간 내 청년 추가채용 지원 예시

	1명 고용	2명 고용	3명 고용	4명 고용	...
30인 미만	6,666,660원	13,333,320원	2,000만 원	2,667만 원	...
30~99인	×	13,333,320원	2,000만 원	2,667만 원	...
100인 이상	×	×	2,000만 원	2,667만 원	...

여기에서 매월 단위로 “지원인원×555,550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청년의 입사나 이직으로 지원 기간 해당 월의 근로한 날이 적을 경우나 월 중간에 채용된 경우에는 월 지원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원대상 청년의 월 임금이 ‘75만 원 이상, 1,573,77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인원 × 지급임금 × 1/3”을 지원한다. 이 규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원대상 개별근로자별로 지원액 충족여부를 판단하고 월 임금이 7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

장려금은 최초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3년 동안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기업규모별 최저 고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시작하며, 사업주 신청에 따라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여기에서 지원 기간 중에 기존 근로자나 지원대상 청년이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게 되면 추가채용으로 기업 전체 근로자 수 증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청년을 채용하였으나, 기존 근로자 중 퇴사자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해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역시 지원 기간이 시작될 수 없고, 지원이 시작된 날이 월 중간인 경우에 최초 지원은 해당 월의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지원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장려금의 지급 시 지원요건 충족 여부는, 지원 기간의 시작 후 매월 말일 기준으로 피보험자 현황 및 청년 신규채용 등의 확인을 통해 판단하며 요건 충족‘월’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한다.

규모 100인 이상인 기업의 경우, 지원 기간 시작 이후 신규채용 3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장려금이 부지급된 해당‘월’에 대해서는 지원 기간 시작 후 6개월마다 평균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평균 3명 이상(소수점 이하 올림) 증가한 경우에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지급된 ‘월’에 대한 지원

한도는 3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한정한다.

6. 장려금 지급신청 및 지급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지원대상 청년을 고용하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대상 청년을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개월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지급신청이 이루어지며, 지급신청서는 온라인(www.ei.go.kr)을 통해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 지원 시작 후 6개월 단위로 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정산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신청서는 사업 단위로 제출하는데 다만,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노무 관리가 필요하고, 고용보험이 구분되어있는 등 사업장 단위로 고용장려금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단위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을 위해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때, 이 사업과 다른 고용장려금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장려금 등의 상호 조정’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한 가지 지원금만 지급된다. 다만, 청년 신규 고용 촉진과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 요건에 둘 다 해당할 경우 지원금을 동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운영 현황

본 연구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월간통계를 기준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운영현황을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2018년 1~5월과 6~9월 사이 참여 현황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6월을 기준으로 달라진 사업지원 조건이 고용장려금사업에 미친 영향을 확인해 보기 위함이다. <표 2-7>은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월별 장려금 지급현황을 나타낸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8년 6월 이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가 급격하게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8>는 장려금 지급현황을 사업장규모별 지급 사업장 수와 인원으로 정리한 결과이다. 표에 제시되어 있듯이 월별 지급현황은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이후 6월부터 지급인

<표 2-7> 월별 지급현황

(단위: 명, 원)

	사업장		인원		금액
	각 월별	순 인원	각 월별	순 인원	각 월별
2018년 1월	76	76	252	252	413,787,280
2018년 2월	141	141	479	479	761,139,140
2018년 3월	300	296	1,203	1,179	1,576,464,980
2018년 4월	445	370	1,923	1,505	2,072,600,780
2018년 5월	760	587	3,620	2,498	3,392,641,650
2018년 6월	2,832	2,530	10,714	8,238	11,538,969,880
2018년 7월	6,590	5,368	23,226	16,316	25,908,499,680
2018년 8월	9,360	6,296	34,164	18,808	37,410,009,310
2018년 9월	10,355	5,976	37,137	16,293	39,527,758,710
계	30,859	21,640	112,718	65,568	122,601,871,410

자료: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월간통계」

원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6월과 7월 각 전월 대비 5,740명과 8,078명의 순 인원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8월과 9월에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의 순 인원이 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사업장의 경우 6월과 7월 각 전월 대비 4배와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각 사업장 수의 변화는 1월부터 5월까지의 증가폭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이런 변화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장려금 사업의 구조적인 변화에 기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참여조건의 완화와 중견기업의 참여 허용이 장려금사업 확대에 도움을 주었음을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7월부터 9월까지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장이나 인원 모두 큰 증가폭을 보이지 않는다.

사업 참여기업의 업종별 특징을 살펴보면 <표 2-9>에 제시되어 있듯이 6~9월 사이 도매 및 소매 업종 참여사업장의 수가 1~5월과 비교했을 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건설업이나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참여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사업의 최초 설립 취지에 따라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같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사업체에 대한 지원이 많았을 것이고 지원 요건에 대한 제한이 풀린 이후 다른 업종에 대한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원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사업 참여기업의 지역적 특징을 보면, <표 2-10>에서 제시된 것처럼 서울·경기 지역 사업체의 참여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1~5월과 비교 시 6~9월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그리고 울산지역 사업장의 참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표 2-8〉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규모별 지급현황

(단위: 개, 명)

	2018년 1월		2018년 2월		2018년 3월		2018년 4월		2018년 5월		2018년 6월		2018년 7월		2018년 8월		2018년 9월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계	76	252	141	479	296	1,179	370	1,505	587	2,498	2,530	8,238	5,368	16,316	6,296	18,808	5,976	16,293
4명 이하	10	30	27	81	64	206	60	183	93	284	488	971	1,170	2,160	1,540	2,712	1,636	2,699
5~9명	15	48	26	81	61	194	55	183	75	237	563	1,112	1,167	2,121	1,385	2,457	1,291	2,267
10~29명	22	69	44	148	70	244	87	320	153	572	777	1,831	1,666	3,611	1,840	4,135	1,675	3,823
30~49명	5	18	15	49	39	139	50	202	63	279	226	869	465	1,720	508	1,912	442	1,342
50~99명	10	36	11	42	27	118	60	280	98	525	248	1,164	475	2,346	495	2,241	474	1,953
100~299명	14	51	15	63	28	164	49	273	93	529	184	1,338	343	2,621	404	2,961	344	2,240
300~499명			3	15	5	31	8	61	11	63	31	552	52	640	81	1,028	70	822
500명 이상					2	83	1	3	1	9	13	401	30	1,097	43	1,362	44	1,147

자료: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월간통계」

〈표 2-9〉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규모별 지급현황

(단위 : 개, 명)

	1~5월		6~8월		9월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계	1,470	5,913	14,194	43,362	5,976	16,293
A. 농업, 임업 및 어업	0	0	14	24	7	9
B. 광업	0	0	5	7		
C. 제조업	557	2,437	5,141	17,526	1,899	5,915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	3	9	30	2	5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 료 재생업	4	14	49	103	14	27
F. 건설업	1	3	372	873	188	420
G. 도매 및 소매업	78	269	2,207	5,385	1,040	2,308
H. 운수 및 창고업	4	20	207	673	131	386
I. 숙박 및 음식점업	0	0	170	782	100	327
J. 정보통신업	450	1,599	1,942	5,471	700	1,628
K. 금융 및 보험업	2	6	123	514	38	132
L. 부동산업	0	0	7	13	3	8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30	790	1,901	4,523	800	1,634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5	109	335	1,328	165	698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	0	0	0		
P. 교육 서비스업	11	31	149	313	56	131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8	603	1,348	5,270	738	2,442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 비스업	9	29	79	228	38	98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 인 서비스업	0	0	136	299	57	125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 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 동	0	0	0	0		
U. 국제 및 외국기관	0	0	0	0		
Z. 분류불능	0	0	0	0		

자료 :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월간통계」

〈표 2-10〉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지역별 지급현황

(단위: 개, 명)

	2018년 1~5월		2018년 6월		2018년 7월		2018년 8월		2018년 9월		계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계	1,273	5,913	2,530	8,238	5,368	16,316	6,296	18,808	5,976	16,293	21,443	65,568
서울	370	1570	554	1,850	1,253	3,910	1,510	4,723	1,449	3,794	5,136	15,847
경기	293	1353	629	1,871	1,330	3,996	1,553	4,781	1,382	4,256	5,187	16,257
부산	91	358	167	401	361	929	478	1,220	597	1,405	1,694	4,313
경북	42	204	177	508	274	778	284	815	344	909	1,121	3,214
경남	50	249	98	324	330	1,086	318	974	296	734	1,092	3,367
인천	42	229	69	230	253	950	294	736	273	891	931	3,036
대구	54	306	155	377	252	778	221	719	244	801	926	2,981
충북	51	312	59	284	201	949	193	741	141	416	645	2,702
충남	66	402	174	710	201	614	229	765	193	583	863	3,074
대전	82	381	174	637	129	342	170	390	124	307	679	2,057
광주	52	198	53	176	116	268	209	664	233	629	663	1,935
전북	21	85	81	343	277	744	278	775	239	516	896	2,463
전남	25	127	83	279	125	291	225	596	210	427	668	1,720
강원	21	94	31	106	112	246	116	313	67	223	347	982
울산	5	21	8	19	112	344	145	411	135	303	405	1,098
세종	1	3	6	102	9	25	17	52	13	30	46	212
제주	7	21	12	21	33	66	56	133	36	69	144	310

자료: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월간통계」

〈표 2-11〉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고용위기지역 지급현황

(단위: 개, 명)

	2018년 1~5월		2018년 6월		2018년 7월		2018년 8월		2018년 9월		계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경상남도 거제시	7	45	6	26	19	58	24	114	13	78	69	321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13	68	15	48	11	47	39	163
경상남도 고성군			2	2	4	6	1	1	4	21	11	30
경상남도 통영시			1	5	5	7	4	15	3	7	13	34
울산광역시 동구	2	12	2	5	27	94	31	110	29	58	91	279
전라남도 목포시			4	9	5	9	27	56	26	64	62	138
전라남도 영암군			29	82	24	54	37	101	25	44	115	281
전라북도 군산시	5	21	19	92	46	125	41	177	49	131	160	546

자료: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월간통계」

<표 2-11>에서 나타나는 고용위기지역 내 사업장 지급현황 또한 흥미로운 추세를 보여준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고성군, 경상남도 통영시,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영암군, 그리고 전라북도 군산시의 경우 1월부터 5월까지 참여 사업장은 모두 14개 사업장으로 경남 거제시,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참여업체가 전무했다. 하지만 6월 이후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6월 63개 사업장 221명, 7월 143개 사업장 421명, 8월 180개 사업장 622명, 그리고 9월 160개 사업장 450명 등 큰 폭으로 참여사업장과 인원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사업조건의 완화로 인해 기존 사업 틀 안에서는 참가할 수 없던 사업장이 새롭게 참여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고, 한편으로는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었던 사업장이 6월부터 변하는 사업개요를 미리 인지하고 사업 참여를 6월 이후로 늦추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연령·성별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표 2-12>와 <표 2-13>에서 보이는 것처럼 25~29세까지 참여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며 여성보다 남성 수취인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별 비중은 월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15~19세 수혜자와 35세 이상 수혜자 비중은 약 2~4%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 반면 25~29세 인원은 전체 수혜자 중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 20~24세 인원

<표 2-12>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연령별 지급현황

(단위: 명)

구분	2018년 1~5월	2018년 6월	2018년 7월	2018년 8월	2018년 9월	계
계	5,913	8,238	16,316	18,808	16,293	65,568
15~19세	163	262	440	440	311	1,616
20~24세	1,542	2,288	4,314	4,958	4,265	17,367
25~29세	2,772	3,645	7,158	8,121	7,073	28,769
30~34세	1,371	1,871	3,944	4,685	4,070	15,941
35세 이상	65	172	460	604	574	1,875

자료: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월간통계」

〈표 2-13〉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성별 지급 현황

(단위: 명)

구분	2018년 1~5월	2018년 6월	2018년 7월	2018년 8월	2018년 9월	계
계	5,913	8,238	16,316	18,808	16,293	65,568
남성	3,576	4,991	9,841	11,134	9,285	38,827
여성	2,337	3,247	6,475	7,674	7,008	26,741

자료: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월간통계」

과 30~34세 인원 역시 전체 수혜자 대비 약 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수혜자가 20~34세의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수혜자 대비 여성 비중 역시 약 40%선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표 2-14>~<표 2-15>는 2018년 6월부터 9월까지의 장려금지급현황에서 성장유망업종과 성장유망업종이 아닌 사업장에 대한 지원현황을 나타낸다. <표 2-14>는 성장유망업종 지원현황, <표 2-15>는 성장유망업종 외 지원현황을 나타낸다.

시범사업에서 요구되었던 성장유망업종 조건이 완화된 현재 성장유망업종을 제외한 업종의 지원이 늘어날 것은 충분히 예견된 사실이며 6월부터 9월까지의 지원현황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려금 지원사업장과 장려금 지원인원 모두에서 비성장유망업종의 비중은 1/4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6월부터 9월까지 큰 폭의 추세변화 없이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규모를 기준으로 세부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5~29인 그리고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비성장유망업종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4〉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성장유망업종 지급현황

(단위: 개, 명)

	2018년 6월		2018년 7월		2018년 8월		2018년 9월		계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계	1,994	6,745	4,059	12,182	4,701	13,969	4,494	12,311	15,248	45,207
~4명	451	867	1,068	1,952	1,393	2,417	1,453	2,291	4,365	7,527
5~9명	425	845	806	1,400	940	1,683	898	1,587	3,069	5,515
10~29명	555	1,372	1,142	2,548	1,223	2,872	1,120	2,486	4,040	9,278
30~49명	169	656	343	1,274	363	1,389	302	913	1,177	4,232
50~99명	194	926	356	1,773	373	1,652	357	1,559	1,280	5,910
100~299명	166	1,227	279	2,088	317	2,368	272	1,817	1,034	7,500
300~499명	26	498	44	501	67	889	59	724	196	2,612
500명 이상	8	354	21	646	25	699	33	934	87	2,633

자료: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월간통계」

〈표 2-15〉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비성장유망업종 지급현황

(단위: 개, 명)

	2018년 6월		2018년 7월		2018년 8월		2018년 9월		계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계	536	1,493	1,309	4,134	1,595	4,839	1,482	3,982	4,922	14,448
~4명	37	104	102	208	147	295	183	408	469	1,015
5~9명	138	267	361	721	445	774	393	680	1,337	2,442
10~29명	222	459	524	1,063	617	1,263	555	1,337	1,918	4,122
30~49명	57	213	122	446	145	523	140	429	464	1,611
50~99명	54	238	119	573	122	589	117	394	412	1,794
100~299명	18	111	64	533	87	593	72	423	241	1,660
300~499명	5	54	8	139	14	139	11	98	38	430
500명 이상	5	47	9	451	18	663	11	213	43	1,374

자료: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월간통계」

제 3 장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사업체 특성 분석

제1절 참여사업체 분석 개요

본 연구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파생되는 고용효과를 분석하고 장려금사업을 통해 파생되는 고용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제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층 고용 장려를 위한 임금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지원 금액이 많고 지원 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인 정책이 고용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임금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업체들이 쉽게 인력을 해고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임금지원 수혜를 받는 청년들의 장기적인 근속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지원 프로그램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중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층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 역시 추정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효과 분석에는 다음과 같은 제약조건이 따른다. 먼저 시범사업이 2017년에 실시됐고 본 사업이 2018년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인 관계로 사업진행 후 고용변화를 엄밀히 추정하기에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시범사업과 정규사업 간 성격 차이 그리고 정규사업 진행 중 발생한 사업지원 조건변화 같은 요인들로 인해 정책변화의 효과를 추정하는 데 어려움을

이 있다. 결론적으로 아직 충분하지 않은 자료의 한계로 체계적인 고용 효과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통계 위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기업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장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알아본다. 첫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기업의 특성을 고용보험 DB를 통해 획득한 고용정보와 한국기업데이터를 통해 입수한 재무정보를 결합해 사업체 특성을 분석한다. 둘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업체를 시범 사업참여업체와 본사업참여업체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비교한다. 셋째,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모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만 참여하는 기업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취인 이탈 비율을 업종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본 연구는 고용보험 행정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표본으로 고용보험 피보험근로자 이력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 사업장 자료를 이용하였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사업자 및 고용보험 피보험 근로자 정보는 워크넷 자료를 이용하였다. 사업장 주요 재무정보는 한국기업데이터 자료를 이용해 추출하였다.

〈표 3-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월별 지급현황

(단위: 명, 천 원)

	사업장		인원		금액
	각 월별	순 인원	각 월별	순 인원	각 월별
2018년 1월	76	76	252	252	413,787
2018년 2월	141	141	479	479	761,139
2018년 3월	300	296	1,203	1,179	1,576,465
2018년 4월	445	370	1,923	1,505	2,072,600
2018년 5월	760	587	3,620	2,498	3,392,642
2018년 6월	2,832	2,530	10,714	8,238	11,538,970
2018년 7월	6,590	5,368	23,226	16,316	25,908,500
2018년 8월	9,360	6,296	34,164	18,808	37,410,009
2018년 9월	10,355	5,976	37,137	16,293	39,527,759
계	30,859	21,640	112,718	65,568	122,601,871

자료: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월간통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현황은 제 2장에서 이미 자세하게 검토했다. 여기서는 <표 3-1>을 통해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현황을 다시 한 번 살펴본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는 2018년 6월 이후 급격하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월별 지급현황은 2018년 5월까지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 6월과 7월 각 전월 대비 5,740명과 8,078명의 순 인원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여사업장의 경우도 6월과 7월 각 전월 대비 4배와 2배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1월부터 5월까지의 증가 폭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이런 변화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제도의 구조적인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2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사업체 특성 분석 결과

1. 재무재표 현황

이번 절에서는 앞서 확인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현황을 바탕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사업체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반적인 지급현황에 대한 자료는 이미 제2장에서 자세하게 논의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업 재무정보를 활용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업 재무제표에서 총자산, 납입자본금, 자본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연구개발비, 유형고정자산, 고정자산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여 시범사업참여사업체와 본사업참여사업체로 구분하여 분석을 하였다. 기업 재무정보는 한국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고용보험사업장 자료와 결합했으며 2018년 재무정보가 아직 조사되지 않은 관계로 재무정보는 2016년과 2017년 재무정보를 기준으로 통계를 추출했다. 고용보험사업장 정보는 2018년 8월까지 확보된 자료를 이용했다.

먼저 재무제표를 살펴보기 전에 표본에서 추출한 고용현황에 대한 기

<표 3-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업체 2018년 고용 현황

(단위: 명)

	시범사업참여업체		본사업참여업체			
			1-5월		6월 이후	
종사자 수	44.83	(69.34)	63.93	(79.82)	37.83	(118.72)
사업 내 추가고용인원	3.61	(1.62)	5.17	(4.33)	5.24	(10.11)

주: ‘시범사업참여업체’는 2017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업체(표본 수: 737개)를 나타내며 ‘본사업참여업체’는 2018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업체를 의미함. 본사업참여업체는 1~5월까지 사업참여업체 288개와 6월 이후 참여업체 8,803개로 나누어 분석함. ()는 표준편차를 나타냄.

초통계를 알아보기로 한다. 표본은 2018년 8월 23일 기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업체 고용정보를 확보한 9,828개 업체로 이들을 2017년 시범사업지원업체, 2018년 1~5월 본사업지원업체, 그리고 2018년 6월 이후 본사업지원사업체로 구분하여 2018년 종사자 수와 추가고용인원을 확인했다.

<표 3-2>에서 볼 수 있듯이 2017년 시범사업지원업체의 경우 근로자 수는 평균 44.83명, 2018년 1~5월 본사업지원업체의 경우 평균 63.93명, 2018년 6월 이후 지원 사업체의 경우 평균 37.83명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의 근로자 수는 2018년 1~5월 본사업지원업체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 내 추가고용인원을 보면 2018년 6월 이후 본사업지원업체에서 추가고용이 5.24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18년 1~5월 본사업지원업체의 경우 추가고용인원이 5.17명으로 나타났다. 추가고용인원이 가장 적었던 집단은 2017년 시범사업지원업체로 평균 3.66명을 기록했다.

사업 참여시기에 따라 근로자 수 규모가 차이 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다. 먼저 2018년 1~5월까지 본사업지원업체의 고용 규모가 가장 크게 잡히는 것은 시범사업지원업체와 비교해 성장유망업종을 비롯해 관련 전·후방산업 업종도 사업대상으로 추가되었는데 이런 추가된 산업 업종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업체들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다. 2018년 6월 이후 사업 참여업체들의 규모가

적게 나타나는 것은 2018년 6월부터 개선된 제도에 의해 성장유망업종 제한이 사라져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체가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기존 시범사업의 경우 최소 3인 이상 고용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중소기업이어야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 제한이 사라진 후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체가 참여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표 3-3〉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업체 고용 및 재무재표 현황

(단위: 십만 원)

	시범사업 참여업체	본사업참여업체		
		1-5월	6월 이후	계
총자산	154,734 (373,675)	280,774 (779,218)	218,758 (1,015,313)	221,019 (1,007,677)
납입자본금	14,306 (44,468)	28,974 (136,076)	18,576 (154,726)	18,955 (154,084)
자본총액	79,594 (230,635)	177,079 (649,651)	109,965 (589,104)	112,412 (59,478)
매출액	132,882 (271,783)	270,295 (613,565)	224,943 (981,216)	226,596 (970,254)
영업이익	9,449 (36,113)	25,767 (108,567)	13,094 (55,598)	13,556 (58,407)
당기순이익	6,493 (29,262)	24,081 (94,981)	9,663 (46,679)	10,188 (49,334)
연구개발비	5,356 (11,592)	5,259 (17,546)	4,629 (34,365)	4,652 (33,898)
유형고정자산	48,560 (106,948)	109,166 (342,924)	67,634 (261,745)	69,149 (265,209)
고정자산	69,967 (157,963)	147,925 (394,328)	104,113 (442,364)	105,710 (440,742)

주: '시범사업참여업체'는 2017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업체(표본 수: 528개)를 나타내며 '본사업참여업체'는 2018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를 의미함. 본사업참여업체는 1~5월까지의 사업참여업체 169개와 6월 이후 참여한 4,406개 업체로 나누어 분석함. ()는 표준편차를 나타냄.

규모별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5월 중 본사업참여업체들 중 10인 이하 규모의 비중은 전체의 42%선으로 나타나는데 6월 이후 참여업체를 살펴보면 전체 업체 중 절반 정도가 1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임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재무정보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3-3>은 시범사업참여사업체와 본사업참여사업체의 재무정보를 2017년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다. 본사업참여사업체의 경우 1월부터 8월까지 참여한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두 집단을 비교해 보면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본사업참여사업장의 재무지표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의 경우 시범사업참여업체(표본 수: 528개)의 총자산은 154억 7,300만 원으로 나타났고 본사업참여업체(표본 수: 4,575개)의 경우 221억 100만 원이었다. 매출액의 경우도 본사업참여업체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범사업참여업체의 매출은 132억 8,000만 원이었고 본사업참여업체의 경우 226억 5,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의 경우도 본사업참여업체가 더 높았는데 시범사업참여업체의 당기순이익은 평균 6억 4,900만 원으로 나타났고 본사업참여업체의 경우 10억 1,8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이와 다르게 시범사업참여업체가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사업참여업체가 4억 6,000만 원을 연구개발에 지출한 데 반해 시범사업참여업체는 평균 5억 3,5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한 조사를 통해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본사업참여사업체의 재무지표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2018년 6월부 사업참여 조건 변화로 중견기업의 사업참여가 가능해진바, 전반적인 참여사업체 재무지표 규모가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사업참여 조건의 변화로 인한 참여사업체 특성에 대한 분석은 4장 FGI 결과에서 좀 더 자세히 논의한다.)

만약 사업 참여조건 변화로 인해 사업체 특성에 변화가 생겼다고 가정한다면 2018년 1~5월까지 참여사업체와 6월 이후 참여사업체 간에서 그 특성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집단을 비교해 보면 자산, 매

출액, 당기순이익, 연구개발비의 모든 지표에서 1~5월까지 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6월 이후 사업참여 업체보다 그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여기서 얻은 결론을 고용규모지표 비교에서 얻은 결론과 비교해 보면 6월 제도 변화 이후 소규모 사업체의 사업참여로 인한 평균 사업체 규모 감소가 중견기업의 사업참여로 인한 참여사업체 규모 증가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거란 추측이 가능하다.

연구개발비 투자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업체(표본 수: 9,827개) 중 연구개발에 전혀 투자하지 않은 사업체의 비중은 23.18%로 나타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참여하지 않은 참여업체(표본 수: 208,497개) 중 연구개발에 전혀 투자하지 않은 비중인 69.17%보다 훨씬 적게 나타났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업체를 시범사업참여업체와 본사업참여업체로 나누어 살펴보면 시범사업참여업체 중(표본 수: 737개) 연구개발에 전혀 투자하지 않은 사업체의 비중은 17.37%로 나타났고 본사업참여업체 중(표본 수: 9,090개)에서는 23.65%로 확인됐다. 본사업참여업체를 2018년 5월까지와 6월 이후로 나누어 확인해보면 2018년 1~5월까지의 참여업체 중 연구개발에 전혀 투자하지 않은 업체 비중은 22.57%로 나타났고 2018년 6월 이후의 경우 23.69%였다. 시범사업참여업체에서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이 성장유망업종으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업종에 따른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는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해서 <표 3-5>~<표 3-8>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이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재무정보를 비교하였다. 산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수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표 3-4 참조)

<표 3-5>는 제조업, <표 3-6>은 운수 및 창고업, <표 3-7>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그리고 <표 3-8>은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업장을 비교하였다.

〈표 3-4〉 산업 분류

	업종	비고
A	농업, 임업 및 어업	01~03
B	광업	05~08
C	제조업	10~34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6~39
F	건설업	41~42
G	도매 및 소매업	45~47
H	운수 및 창고업	49~52
I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J	정보통신업	58~63
K	금융 및 보험업	64~66
L	부동산업	68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73
N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4~76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P	교육서비스업	85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86~87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0~91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94~96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97~98
U	국제 및 외국 기관	99

〈표 3-5〉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업체 고용 및 재무제표 현황 - 제조업

(단위: 십만 원)

	시범사업 참여업체	본사업참여업체		
		1~5월	6월 이후	계
총자산	267,459 (383,487)	478,154 (1,107,060)	327,557 (1,017,294)	332,807 (1,020,619)
납입자본금	25,258 (64,928)	53,543 (209,216)	24,839 (124,281)	25,840 (128,213)
자본총액	130,938 (230,256)	306,108 (941,950)	174,525 (625,674)	179,112 (639,438)

〈표 3-5〉의 계속

	시범사업 참여업체	본사업참여업체		
		1~5월	6월 이후	계
매출액	258,208 (369,321)	433,132 (725,212)	330,900 (1,023,336)	334,463 (1,014,452)
영업이익	18,017 (38,714)	39,056 (129,151)	21,129 (70,556)	21,754 (73,405)
당기순이익	11,224 (33,477)	36,152 (122,227)	15,202 (59,523)	15,932 (62,829)
연구개발비	8,422 (15,381)	9,990 (26,157)	8,026 (49,644)	8,094 (49,013)
유형고정자산	9,904 (136,036)	202,471 (510,838)	121,720 (375,312)	124,535 (380,961)
고정자산	131,560 (193,652)	249,999 (563,536)	175,385 (592,117)	177,986 (591,162)

주: '시범사업참여업체'는 2017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업체(표본 수: 67개)를 나타내며 '본사업참여업체'는 2018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를 의미함. 본사업참여업체는 1~5월까지의 사업참여업체 192개와 6월 이후 참여업체 1,855개로 나누어 분석함. ()는 표준편차를 나타냄.

먼저 제조업체를 살펴보면 2018년 1~5월 사이 본사업참여업체(표본 수: 67개)가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연구개발비로 봤을 때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2018년 6월 이후 본사업 참여업체(표본 수: 1,855개)가 그 뒤를 이었다. 제조업체로 한정하여 확인했을 때, 시범사업참여업체(표본 수: 192개)의 규모가 가장 작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운수 및 창고업(표 3-6 참조)을 살펴보면 제조업체와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1~5월 사이 본사업참여업체(표본 수: 12개)가 매출액,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2018년 6월 본사업참여업체(표본 수: 811개)가 그 뒤를 이었다. 특이한 점은 시범사업참여업체(표본 수: 24개)의 연구개발비 지출(평균 약 3억 9,600만 원)이 본사업참여업체의 관련 지출(평균 약 8,300만 원)보다 약 다섯 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업체 고용 및 재무제표 현황 - 운수 및 창고업

(단위: 십만 원)

	시범사업 참여업체	본사업참여업체		
		1~5월	6월 이후	계
총자산	137,707 (382,027)	540,420 (988,134)	101,603 (267,718)	108,001 (294,046)
납입자본금	20,534 (38,787)	33,495 (100,228)	7,026 (20,511)	7,412 (23,645)
자본총액	94,303 (364,711)	332,252 (827,082)	45,351 (135,806)	49,534 (168,856)
매출액	97,579 (179,460)	791,235 (1,293,735)	192,117 (786,865)	200,853 (798,549)
영업이익	4,984 (36,562)	95,302 (250,763)	8,303 (37,651)	9,572 (48,448)
당기순이익	3,430 (29,528)	59,194 (160,043)	6,250 (28,866)	7,022 (34,701)
연구개발비	3,960 (9,090)	946 (2,261)	832 (3,268)	834 (3,254)
유형고정자산	40,392 (78,600)	126,840 (212,536)	25,240 (75,367)	26,721 (79,688)
고정자산	71,847 (188,240)	196,444 (347,833)	38,228 (11,0273)	40,535 (118,160)

주: '시범사업참여업체'는 2017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업체(표본 수: 24개)를 나타내며 '본사업참여업체'는 2018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를 의미함. 본사업참여업체는 1~5월까지의 사업참여업체 12개와 6월 이후 참여업체 811개로 나누어 분석함. ()는 표준편차를 나타냄.

〈표 3-7〉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업체 고용 및 재무제표 현황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단위: 십만 원)

	시범사업 참여업체	본사업참여업체		
		1~5월	6월 이후	계
총자산	91,577 (400,104)	90,385 (219,416)	98,208 (504,772)	97,732 (492,047)
납입자본금	7,861 (26,224)	9,173 (20,373)	8,687 (30,207)	8,716 (29,690)

〈표 3-7〉의 계속

	시범사업 참여업체	본사업참여업체		
		1~5월	6월 이후	계
자본총액	54,187 (249,727)	64,475 (177,999)	58,709 (323,967)	59,060 (316,915)
매출액	64,945 (176,502)	61,848 (136,243)	94,795 (621,217)	92,787 (602,929)
영업이익	5,558 (41,426)	10,060 (44,667)	2,807 (33,262)	3,249 (34,066)
당기순이익	3,649 (29,520)	19,305 (71,494)	1,679 (26,758)	2,753 (31,528)
연구개발비	4,395 (9,054)	3,877 (9,503)	6,240 (32,061)	6,096 (31,159)
유형고정자산	10,867 (37,995)	16,504 (71,466)	15,209 (79,476)	15,288 (78,960)
고정자산	27,869 (105,977)	55,675 (171,373)	50,046 (326,433)	50,389 (319,066)

주: '시범사업참여업체'는 2017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업체(표본 수: 198개)를 나타내며 '본사업참여업체'는 2018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를 의미함. 본사업참여업체는 1~5월까지의 사업참여업체 39개와 6월 이후 참여업체 601개로 나누어 분석함. ()는 표준편차를 나타냄.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체의 경우(표 3-7 참조) 매출액과 연구개발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2018년 6월 이후 본사업 참여업체(표본 수: 601개)의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났지만 당기순이익은 가장 적었다. 2018년 1~5월 본사업참여업체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표본 수가 너무 적어서(39개) 큰 의미를 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 3-8〉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업체 고용 및 재무제표 현황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단위: 십만 원)

	시범사업 참여업체	본사업참여업체		
		1~5월	6월 이후	계
총자산	56,577 (216,845)	100,512 (243,768)	60,795 (210,977)	62,622 (212,482)
납입자본금	3,268 (6,539)	7,129 (14,319)	6,715 (37,384)	6,734 (36,636)
자본총액	29,971 (130,750)	53,731 (151,958)	36,019 (146,101)	36,833 (146,265)
매출액	46,637 (104,113)	79,182 (114,200)	68,893 (241,200)	69,366 (236,803)
영업이익	3,254 (9,991)	4,415 (12,252)	3,999 (20,000)	4,018 (19,702)
당기순이익	6,244 (24,074)	3,554 (10,921)	3,615 (19,651)	3,613 (19,329)
연구개발비	2,679 (7,873)	2,207 (3,958)	1,536 (6,324)	1,567 (6,234)
유형고정자산	12,542 (39,577)	53,527 (152,367)	13,029 (60,235)	14,892 (67,503)
고정자산	20,441 (69,511)	69,579 (203,662)	28,551 (114,924)	30,438 (120,423)

주: '시범사업참여업체'는 2017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업체(표본 수: 63개)를 나타내며 '본사업참여업체'는 2018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를 의미함. 본사업참여업체는 1~5월까지의 사업참여업체 23개와 6월 이후 참여업체 477개로 나누어 분석함. ()는 표준편차를 나타냄.

마지막으로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의 경우(표 3-8 참조) 2018년 1~5월 본사업참여업체(표본 수: 23개)의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시범사업참여업체(표본 수: 63개), 2018년 6월 이후 본사업참여업체(표본 수: 477개) 순으로 나타났다.

2. 연구개발비

위에서 나타난 것처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사업장과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의 재무제표상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연구개발비분야였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가 특히 많은 네 업종을 살펴봤을 때 이들 모두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들이 연구개발에 더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연구개발비 현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사업장의 비율을 알아본다. 이를 위해 2016년과 2017년 기준으로 연구개발에 비용을 투자한 사업장을 표본에 있는 총사업장 수로 나누어 비율을 구한다. 먼저 업종별 구분 없이 살펴본 결과는 <표 3-9>(2016년)와 <표 3-10>(2017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업종별 구분 없이 살펴본 결과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사업장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보다 2017년에 연구개발비에 투자하는 사업장의 비중이 1.5배(22.01% → 32.90%)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표 3-9> 2016년 연구개발비 비중-전 산업

(단위: 개, %)

연구개발비 지출 여부	빈도수	비중
연구개발비 지출 없음	271,586	77.99
연구개발비 지출 있음	76,643	22.01
합계	348,229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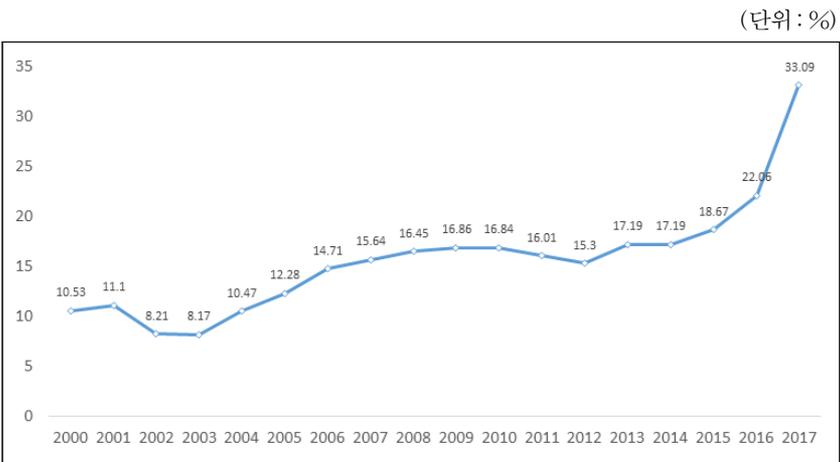
<표 3-10> 2017년 연구개발비 비중-전 산업

(단위: 개, %)

연구개발비 지출 여부	빈도수	비중
연구개발비 지출 없음	146,491	67.10
연구개발비 지출 있음	71,833	32.90
합계	216,550	33.09

2000년 이후 연구개발비 지출을 살펴보면 [그림 3-1]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사업체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1>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사업장으로 표본을 제한한 상태에서 연구개발비에 투자하는 사업장 비중을 계산한 결과를 보여준다. 결과를 보면 2016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지원기준) 중 63.06%의 사업장이 연구개발비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7년에는 총 9,827개 사업장 중 76.82%의 사업장이 연구개발비에 비용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주: 매년 전체 사업체 중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업체의 비율을 계산한 결과를 나타낸다.

<표 3-11> 연구개발 투자 사업체 비중-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

(단위: 개, %)

연도	비중(%)	표본수
2016년	63.06	8,550
2017년	76.82	9,8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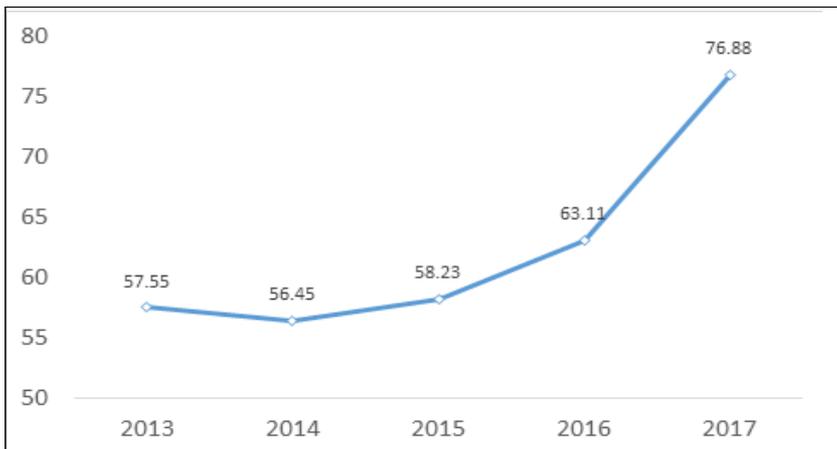
[그림 3-2]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 사업장의 연구개발비 투자 내역을 2013년부터 살펴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사업장 중 연구개발비 투자가 0원이 아닌 비중은 2013년 57.55%(표본 5,932), 2014년 56.45%(표본 6,633), 2015년 58.23%(표본 7,548)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개발비 투자 사업장 비중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참고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결과는 2013년 17.19%(표본 347,928), 2014년 17.19%(표본 379,269), 2015년 18.67%(표본 384,705)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실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사업장들이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비중이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두 가지 사항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먼저 위의 결과는 연구개발비 투자 유무로 나타난 결과이며 연구개발비의 절대적인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림 3-2)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

(단위: %)



주: 매년 전체사업체 중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업체의 비율을 계산한 결과를 나타냄.

〈표 3-12〉 2016년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단위: %, 개)

연도		비중(%)	표본 수
제조업	장려금	12.63	2,485
	비장려금	3.27	2,018
운수 및 창고업	장려금	17.64	1,060
	비장려금	1.47	1,40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장려금	138.18	936
	비장려금	23.83	665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장려금	5.70	747
	비장려금	6.41	643

〈표 3-13〉 2017년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단위: %, 개)

연도		비중(%)	표본 수
제조업	장려금	14.90	2,109
	비장려금	5.26	1,348
운수 및 창고업	장려금	109.38	844
	비장려금	3.16	84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장려금	348.19	817
	비장려금	210.18	503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장려금	25.55	562
	비장려금	3.39	410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추가로 확인해 보았다. 먼저 <표 3-12>~<표 3-13>은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보여준다. 이는 사업장의 실질적인 규모 대비 연구개발비에 투자하는 비중을 나타내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표가 될 것이다. 표본 수가 적지만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들의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이는 2016년과 2017년 결과에서 모두 나타나는 것으로 제조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 특히 두드러

졌다. 특히 연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보이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경우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연구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 중 하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연구개발비에 투자하지 않는 사업장의 비중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실제 연구개발비에 투자하는 업체로 표본을 제한했을 시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와 비참여업체 간의 연구개발비 지출여부를 확인해 보았다.

<표 3-14>~<표 3-15>는 연구개발비 지출여부를 각 산업 업종별로 나누어 살펴본 것들이다. 앞서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을 추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 수가 유의미한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 4개의 업종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업종별로 세분화해서 연구개발비 비중을 살펴본 결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에서 연구개발비 투자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2016년 연구개발 투자 사업체 비중

(단위: %, 개)

업종		비중(%)	표본 수
제조업	장려금	69.85	2,992
	비장려금	71.13	4,448
운수 및 창고업	장려금	45.64	1,387
	비장려금	78.24	5,6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장려금	69.95	1,148
	비장려금	78.48	1,882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장려금	60.87	1,219
	비장려금	82.36	2,727

〈표 3-15〉 2017년 연구개발 투자 사업체 비중

(단위: %, 개)

업종		비중(%)	표본 수
제조업	장려금	79.85	3,131
	비장려금	84.58	4,708
운수 및 창고업	장려금	63.20	1,470
	비장려금	88.80	6,10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장려금	82.32	1,267
	비장려금	87.64	2,063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장려금	76.88	1,341
	비장려금	90.52	3,006

이는 앞서 확인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에서 연구개발비 지출비중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의 업종별 특성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알려준다.

이를 <표 3-12>와 <표 3-13>에서 확인한 결과와 연결시켜 생각해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에 참여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장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비율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보다 낮지만 투자하는 사업장으로 표본을 제한해서 살펴보면 연구개발에 매출 대비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시범사업(2017년) · 본사업(2018년) 참여사업장 비교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은 2017년 시범사업에 이어 2018년 현재 본사업이 진행 중이다. 시범사업과 본사업 간 제도 변화 이외에도 본사업 진행 중 제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사업장을 (1) 시범사업참여사업장, (2)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의 본사업참여사업장, (3) 2018년 6월 이후 본사업참여사업장으로 나누어서 분석해 보았다.

〈표 3-16〉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2017년 기준)

(단위: 개, %)

	업체 수	비율(%)
2017년 시범사업참여업체	737	7.50
2018년 1월~5월 본사업참여업체	288	2.93
2018년 6월 이후 본사업참여업체	8,803	89.57

먼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시기는 신청일 기준 혹은 지급일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참여시기를 잡는다. 한국기업데이터의 재무제표 정보는 현재 2017년 자료만 존재하기 때문에 분석 역시 2017년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3장에서 이미 다룬 것처럼 장려금사업 참여 조건의 완화는 2018년 6월 이후 사업참여업체의 급속한 증가를 불러왔다.

〈표 3-17〉 시범사업참여업체(2017년 기준)

(단위: 십만 원)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피보험자 수	737	44.83	69.34
총자산	528	154,734	373,675
전년 대비 총자산 변화	489	22,056	70,093
납입자본금	528	14,306	44,468
자본총액	528	79,594	230,635
매출액	528	132,882	271,783
전년 대비 매출액 변화	489	23,854	97,358
영업이익	528	9,449	36,113
전년 대비 영업이익 변화	489	3,572	29,732
당기순이익	528	6,493	29,262
전년도 대비 당기순이익 변화	489	2,708	38,955
연구개발비	528	5,356	11,592
유형고정자산	528	48,559	106,948
고정자산	528	69,967	157,963

<표 3-17>~<표 3-19>는 피보험자 수, 자본금, 전년도 대비 자본금 변화, 총자산, 납입자본금, 자본총액, 매출액, 전년도 대비 매출액 변화, 영업이익, 전년도 대비 영업이익 변화, 당기순이익, 전년도 대비 당기순이익 변화, 연구개발비, 유형고정자산, 그리고 고정자산을 위의 3개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본 것들이다.

<표 3-17>~<표 3-19>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참여에 제한이 없어진 2018년 6월 이후 참여사업장들은 피보험자 수나 재무제표상 시범사업참여사업장과 2018년 5월까지의 본사업참여사업장에 비해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 참여조건이 변화가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 성격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사업 참여조건이 완화는 참여사업장 수의 증가를 불러왔지만 이와 함께 참여사업장을 사전에 선택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졌음을 또한 의미한다. 이는 위의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

<표 3-18> 2018년 1~5월 본사업참여업체(2017년 기준)

(단위: 십만 원)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피보험자 수	288	63.93	79.82
총자산	169	280,774	779,218
전년 대비 총자산 변화	156	37,011	125,380
납입자본금	169	28,974	136,076
자본총액	169	177,079	649,651
매출액	169	270,295	613,565
전년 대비 매출액 변화	156	22,431	163,395
영업이익	169	25,767	108,567
전년 대비 영업이익 변화	156	1,777	52,231
당기순이익	169	24,081	94,981
전년도 대비 당기순이익 변화	156	6,382	71,249
연구개발비	169	5,259	17,546
유형고정자산	169	109,166	342,924
고정자산	169	147,925	394,328

〈표 3-19〉 2018년 6월 이후 본사업참여업체(2017년 기준)

(단위: 십만 원)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피보험자 수	8,802	37.82	118.72
총자산	4,466	218,758	1,015,313
전년 대비 총자산 변화	4,235	21,580	147,607
납입자본금	4,466	18,576	154,726
자본총액	4,466	109,965	589,104
매출액	4,466	224,943	981,216
전년 대비 매출액 변화	4,235	23,998	145,285
영업이익	4,466	13,094	55,598
전년 대비 영업이익 변화	4,235	2,326	32,088
당기순이익	4,466	9,663	46,679
전년도 대비 당기순이익 변화	4,235	823	35,524
연구개발비	4,466	4,629	34,365
유형고정자산	4,466	67,634	261,745
고정자산	4,466	104,113	442,364

이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장들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혜를 받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소규모 사업장들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을 통해 고용이 얼마나 증가하고 성장하는지는 자료 부족으로 아직 확인할 수 없지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사업체 성격 변화는 2018년 6월 이후 눈에 띄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제도 변화를 통해 6월 이후로 중견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규모가 큰 사업체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를 기대할 수 있는데 소규모 사업장의 참여에서 오는 규모에 대한 음의 효과와 중견기업의 참여에서 오는 양의 효과가 서로 반대되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실제 분석결과를 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제도 변화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참여를 더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0〉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 약정임금(당해 기준)

(단위: 명, 천 원)

신청시기	인원	평균	최저값	최대값
시범사업	3,801	2,140.87	480	33,333.52
본사업(2018년 1~5월)	2,400	2,298.87	800	23,000
본사업(2018년 6월 이후)	29,712	2,217.01	496.98	42,000

주: 최소임금 400,000원 이상을 기준으로 함.

〈표 3-21〉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인원 고용보험 이탈률(당해 기준)

(단위: 명, %)

신청시기	총인원	이탈인원	근무인원	비율
시범사업	3,806	457	3,349	12.01
본사업(2018년 1~5월)	2,403	148	2,255	6.16
본사업(2018년 6월 이후)	29,767	1,895	27,872	6.37

주: 최소임금 400,000원 이상을 기준으로 함.

〈표 3-20〉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 인원의 평균 약정임금을 나타낸다. 입사 당해 기준임금을 살펴봤을 경우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본사업에 참여한 인원의 평균임금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2018년 6월 이후 고용된 피고용자 임금이 그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과 2018년 1~5월 정규사업 참여자의 임금차이는 약 10% 정도로 나타났다.

〈표 3-21〉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의 청년 채용인원의 퇴사 비중을 나타낸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인원의 퇴사여부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먼저 고용보험 DB상에 나타난 고용보험 DB 등록일과 삭제일을 확인했다. 만약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인원이 사업 참여 후 퇴사했다면 삭제일이 기록될 것이다. 따라서 참여인원 중 고용보험 DB에 삭제일이 기록된 인원의 비중을 계산했다.

분석 결과 2017년 시범사업 참여인원 중 약 12.01%,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참여를 시작한 인원 중 6.16%, 6월 이후의 참여인원 중 6.37%가 2018년 9월 현재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시범사업 참여인원 중

퇴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일단 입사일이 먼저이기 때문에 퇴사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2018년 6월 이후 참가자의 퇴사 비율이 1월부터 5월 사이 참가자보다 높은 이유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업의 성격이 바뀜으로 인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참여사업장의 배경 역시 변화가 있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고, 이것이 참여인원의 일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재무제표상 규모가 크다고 해서 좋은 사업장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한 가지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앞서 확인한 약정임금 차이에서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2018년 1월에서 5월까지의 참여자들의 평균임금이 다른 피고용인들의 평균임금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과 궤를 같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피고용인과 사업장의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자의 퇴직비율을 업종별로 확인해 보았다. <표 3-22>~<표 3-26>은 그러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는 참여인원의 숫자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다음의 다섯 개 업종을 위주로 살펴본다(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시설관리사업,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표에서 나타나는 것은 큰 전 사업을 통합하여 추정한 결과와 틀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범사업 참여자들의 이탈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참여자 이탈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예외로는 시설관리사업과 운

<표 3-22>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인원 퇴사 비율 - 제조업

(단위: 명, %)

신청시기	총인원	퇴사인원	근무인원	비율
시범사업	1,312	165	1,147	12.58
본사업(2018년 1~5월)	937	66	871	7.04
본사업(2018년 6월 이후)	10,370	832	9,538	8.02

주: 최소임금 400,000원 이상을 기준으로 함.

〈표 3-23〉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인원 퇴사 비율 - 운수 및 창고업

(단위: 명, %)

신청시기	총인원	퇴사인원	근무인원	비율
시범사업	150	18	132	12.00
본사업(2018년 1~5월)	186	14	172	7.53
본사업(2018년 6월 이후)	3,438	239	3,199	6.95

주: 최소임금 400,000원 이상을 기준으로 함.

〈표 3-24〉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인원 퇴사 비율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단위: 명, %)

신청시기	총인원	퇴사인원	근무인원	비율
시범사업	1,379	143	1,236	10.37
본사업(2018년 1~5월)	342	13	329	3.80
본사업(2018년 6월 이후)	3,280	125	3,155	3.81

주: 최소임금 400,000원 이상을 기준으로 함.

〈표 3-25〉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인원 퇴사 비율 - 시설관리사업

(단위: 명, %)

신청시기	총인원	퇴사인원	근무인원	비율
시범사업	510	69	441	13.53
본사업(2018년 1~5월)	234	15	219	6.41
본사업(2018년 6월 이후)	3,243	188	3,055	5.80

주: 최소임금 400,000원 이상을 기준으로 함.

〈표 3-26〉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인원 퇴사 비율 - 교육서비스업

(단위: 명, %)

신청시기	총인원	퇴사인원	근무인원	비율
시범사업				
본사업(2018년 1~5월)	390	16	374	4.10
본사업(2018년 6월 이후)	3,495	183	3,312	5.24

주: 최소임금 400,000원 이상을 기준으로 함.

수 및 창고업으로 이들 업종에서는 2018년 6월 이후 참여자들의 이탈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하나 특이할 만한 사실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 퇴사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난 것이다. 본사업참여자는 1월에서 5월의 경우 총 342명 중 13명만이 퇴사해 3.80%의 퇴사율을 보였고 6월 이후 참여자 역시 3,280명의 참여자 중 125명만이 이탈하여 3.81%의 퇴사율을 보였다.

교육서비스업 같은 경우 시범사업(2017년) 참여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시범사업 시행 요건이었던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검토해 볼 것은 업종별 약정임금의 차이이다. <표 3-27>~<표 3-31>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자의 약정임금을 업종별로 확인해 보았다. 퇴직률을 계산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참여인원의 숫자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시설관리사업,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표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 업종별 임금의 차이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조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시설관리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표 3-27> 약정임금 - 제조업

(단위: 명, 천 원)

신청시기	인원	평균	최저값	최대값
시범사업	1,311	2,176.25	480	5,000
본사업(2018년 1~5월)	936	2,465.90	1,200	4,628
본사업(2018년 6월 이후)	10,352	2,324.20	500	36,000

주: 최소임금 400,000원 이상을 기준으로 함.

〈표 3-28〉 약정임금 - 운수 및 창고업

(단위: 명, 천 원)

신청시기	인원	평균	최저값	최대값
시범사업	150	2,048.72	1,260	3,775
본사업(2018년 1~5월)	186	2,133.17	1,280	15,000
본사업(2018년 6월 이후)	3,437	2,053.76	500	42,000

주: 최소임금 400,000원 이상을 기준으로 함.

〈표 3-29〉 약정임금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단위: 명, 천 원)

신청시기	인원	평균	최저값	최대값
시범사업	1,377	2,178.85	500	19166.67
본사업(2018년 1~5월)	342	2,238.51	900	4901.28
본사업(2018년 6월 이후)	3,277	2,358.84	500	27,854

주: 최소임금 400,000원 이상을 기준으로 함.

〈표 3-30〉 약정임금 - 시설관리사업

(단위: 명, 천 원)

신청시기	인원	평균	최저값	최대값
시범사업	509	1,963.21	510	5,270
본사업(2018년 1~5월)	234	2,134.22	1,200	3,783.34
본사업(2018년 6월 이후)	3,238	2,239.69	540	10,733.33

주: 최소임금 400,000원 이상을 기준으로 함.

〈표 3-31〉 약정임금 - 교육서비스업

(단위: 명, 천 원)

신청시기	인원	평균	최저값	최대값
시범사업				
본사업(2018년 1~5월)	389	2,307.80	800	23,000
본사업(2018년 6월 이후)	3,481	2,245.06	550	25,000

주: 최소임금 400,000원 이상을 기준으로 함.

4.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사업장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층 고용지원을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지만 사업체를 통한 간접지원과 청년구직자에 대한 직접지원이라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지원조건 및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의 참여사업장 중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두 사업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체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에만 참여하고 있는 사업체와 비교했을 때 고용지표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표 3-32>는 2018년 7~9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사업장 정보를 나타낸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장은 총 16,419개로 이들 중 32.84%인 5,329개 사업장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두 집단의 특성을 비교했을 때 <표 3-33>에서 볼 수 있듯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모두 참여하는 사업장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에만 참여하는 사업장보다 상시근로자 수, 사업 내 추가고용인원, 장려금 지원 금액 모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업에 모두 참여하는 사업장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에만 참여하는 사업장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많았고 장려금 지원인원 역시 많았으며 장려금 역시 더 많이 지원받았다. 두 사업 모두에 참여하는 업체의 상시근로자 수는 평균 41.79명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에만 참여하는 업체의 26.64명보다 약 1.5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내 추가고용인원 역시

<표 3-32>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2018년 7~9월 기준)

(단위: 개, %)

	업체 수	비율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	11,027	67.16
청년추가고용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동시 참여업체	5,392	32.84
합 계	16,419	100.00

〈표 3-33〉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업체 비교

(단위: 명, 천 원)

변수		평균	표준편차
상시근로자 수	청년추가	26.64	107.88
	청년추가+내일채움	41.79	91.24
사업 내 추가고용인원	청년추가	3.37	6.67
	청년추가+내일채움	5.27	8.91
지원금액	청년추가	6,069.55	11,751.95
	청년추가+내일채움	10,325.10	17,615.15

주: ‘청년추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는 업체(표본 수: 11,207)를 나타내며 ‘청년추가+내일채움’은 두 사업 모두 참여하고 있는 업체(표본 수: 5,392)를 의미함.

마찬가지로 두 사업 모두에 참여하는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보다 약 1.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원금액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3-34〉~〈표 3-38〉은 업종을 구분하여 두 집단의 상시근로자 수, 사업 내 추가고용인원, 지원금액을 비교한다. 여기서는 사업참여비중이 높은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두 집단을 비교했다.

〈표 3-34〉는 제조업에서 두 집단의 고용지표 차이를 보여준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 중 제조업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수, 사업 내 추가고용인원, 지원금액 모두 전 산업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두 사업 모두 참여하는 사업체가 그렇지 않은 사업체보다 세 지표 모두에서 약 1.5배 정도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5〉는 도매 및 소매업에서 두 집단의 고용지표 차이를 보여준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 중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수, 사업 내 추가고용인원, 지원금액 모두 전 산업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두 사업 모두 참여하는 사업체가 그렇지 않은 사업체 보다 세 지표 모두에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상시근로자 수 차이에 있어서는 전 산업평균보다 두 집단 간 차이가 약간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34〉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업체 비교 - 제조업
(단위: 명, 천 원)

변수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상시근로자 수	청년추가	36.13	157.47	3,551
	청년추가+내일채움	57.47	104.44	2,053
사업 내 추가고용인원	청년추가	3.80	8.82	3,551
	청년추가+내일채움	6.05	11.04	2,053
지원금액	청년추가	6,858.22	14,649.88	3,551
	청년추가+내일채움	11,747.30	21,275.91	2,053

주: '청년추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는 업체(표본 수: 3,551)를 나타내며 '청년추가+내일채움'은 두 사업 모두 참여하고 있는 업체(표본 수: 2,053)를 의미함.

〈표 3-35〉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업체 비교 - 도매 및 소매업
(단위: 명, 천 원)

변수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상시근로자 수	청년추가	13.31	34.88	1,957
	청년추가+내일채움	22.23	47.43	731
사업 내 추가고용인원	청년추가	2.61	4.01	1,957
	청년추가+내일채움	3.89	6.50	731
지원금액	청년추가	4,568.01	6,915.26	1,957
	청년추가+내일채움	7,118.72	10,859.46	731

주: '청년추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는 업체(표본 수: 1,957)를 나타내며 '청년추가+내일채움'은 두 사업 모두 참여하고 있는 업체(표본 수: 731)를 의미함.

〈표 3-36〉은 정보통신업에서 두 집단의 고용지표 차이를 보여준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 중 정보통신업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수, 사업 내 추가고용인원, 지원 금액 모두 전 산업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두 사업 모두 참여하는 사업체가 그렇지 않은 사업체보다 세 지표 모두에서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통신업 사업체의 특징으로는 세 가지 지표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전 산업평균과의 비교 시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표 3-36〉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업체 비교 - 정보통신업

(단위: 명, 천 원)

변수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상시근로자 수	청년추가	20.16	63.01	1,217
	청년추가+내일채움	28.11	49.60	935
사업 내 추가고용인원	청년추가	3.60	4.42	1,217
	청년추가+내일채움	4.62	4.86	935
지원금액	청년추가	6,888.98	9,421.11	1,217
	청년추가+내일채움	9,947.45	12,045.48	935

주: '청년추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는 업체(표본 수:1,217)를 나타내며 '청년추가+내일채움'은 두 사업 모두 참여하고 있는 업체(표본 수:935)를 의미함.

〈표 3-37〉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업체 비교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단위: 명, 천 원)

변수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상시근로자수	청년추가	12.92	61.96	1,454
	청년추가+내일채움	29.62	100.01	821
사업내 추가고용인원	청년추가	2.46	4.08	1,454
	청년추가+내일채움	4.10	5.59	821
지원금액	청년추가	4,485.24	7,290.98	1,454
	청년추가+내일채움	8,498.20	12,988.97	821

주: '청년추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는 업체(표본 수:1,454)를 나타내며 '청년추가+내일채움'은 두 사업 모두 참여하고 있는 업체(표본 수:821)를 의미함.

〈표 3-37〉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 두 집단의 고용지표 차이를 보여준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 중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수, 사업 내 추가고용인원, 지원 금액 모두 전 산업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두 사업 모두 참여하는 사업체가 그렇지 않은 사업체보다 세 지표 모두에서 큰 것을 확인할

〈표 3-38〉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업체 비교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단위: 명, 천 원)

변수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상시근로자 수	청년추가	29.56	54.75	1,345
	청년추가+내일채움	65.03	87.23	338
지원인원	청년추가	4.03	6.51	1,345
	청년추가+내일채움	8.57	10.64	338
지원금액	청년추가	7,243.70	13,267.01	1,345
	청년추가+내일채움	16,008.15	24,109.18	338

주: '청년추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은 업체(표본 수: 1,345)를 나타내며 '청년추가+내일채움'은 두 사업 모두 참여하고 있는 업체(표본 수: 338)를 의미함.

수 있다. 특히 다른 산업과의 비교 시 두 사업 모두에 참여하는 사업체들의 지표가 그렇지 않은 사업체들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 상시근로자 수의 경우 두 사업 모두에 참여하는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보다 약 2.3배 정도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38〉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두 집단의 고용지표 차이를 보여준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참여업체는 상시근로자 수, 사업 내 추가고용인원, 지원 금액 모두 전 산업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두 사업 모두 참여하는 사업체가 그렇지 않은 사업체보다 세 지표 모두에서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지표에서 두 사업 모두에 참여하는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보다 약 2배 이상 규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결과를 살펴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도 참여하는지의 여부가 고용지표상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모두를 지원받는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클 가능성이 있다. 규모가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용여력이 높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지원 인원과 지원 금액을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두 집단 간의 차이는 고용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가 확보되면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 전·후 고용변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한 고용증진은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장려금 지원이 단기적으로 고용증진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고용을 유지시키는 데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자료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 이전 고용변화와 참여 이후 고용변화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사업의 고용효과를 추정할 수 있지만 현재 본 사업이 시행된 지 최소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의 자료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 후 고용변화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다. 특히 장기적인 고용변화를 추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여기서는 현재 접근 가능한 자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사업 참여에 따른 고용변화를 알아보기로 한다. <표 3-39>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 이전 고용변화와 사업 내 추가고용인원을 시범사업참여업체, 2018년 1~5월까지의 본사업참여업체, 그리고 2018년 6월 이후 본사업참여업체로 구분하여 추정한다. 먼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 이전 고용변화는 고용보험 DB 기준 전년 대비 종사자 수 변화를 연간 고용변화로 놓고 이에 대한 평균값을 구한 것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해당 사업체들의 고용변화 평균값을 구한 것이다. 사업 내 추가고용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 이후 일어난 추가고용인원의 수를 나타낸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시범사업참여업체와 2018년 5월까지의 본사업참여업체의 경우 사업 내 추가고용의 수가 지난 5년 평균 고용변화보다 적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2018년 6월 이후 본사업참여업체의 추가고용인원의 수가 지난 5년 평균 고용변화보다 두 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내 추가고용의 수를 살펴보면 본사업참여업체에서 일어난 추가

〈표 3-39〉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고용변화

(단위: 명)

	2017년 시범사업참여 업체		2018년 1~5월 본사업참여업체		2018년 6월 이후 본사업참여업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 이전 고용변화	4.27	(15.78)	5.93	(20.83)	2.49
	(-225, 245)		(-45, 378)		(-1116, 1212)	
사업 내 추가고용인원	3.56	(1.57)	5.66	(6.57)	5.11	(9.61)
	(3, 18)		(3, 80)		(1, 303)	

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 이전 고용변화와 사업 내 추가고용인원 추정 시 쓰인 표본 수는 시범사업참여업체의 경우 각 2,049개와 732개이고 2018년 1~5월 본사업참여업체의 경우 925개와 319개, 2018년 6월 이후 참여업체의 경우 25,612개와 9,300개임. 추정값은 평균과 표준편차이고 (,)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나타냄.

고용인원이 시범사업참여업체들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사업의 경우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제약이 거의 없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참여 이전 사업체의 고용변화 값이 작은 이유도 앞에서 확인했듯이 6월 이후 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의 경우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서 얻은 결과는 그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일단 구조적인 계량 분석이 아니므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로 인한 고용변화 차이가 유의미한지에 대한 해석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또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 이후 고용의 변화를 추정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사중손실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초통계를 기반으로 한 고용변화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가 긍정적인 고용효과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과대평가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 차후 추가적인 고용지표가 확보되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고용효과를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6.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 성별 종사자 수 비교

<표 3-40>은 2016~2018년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 여성고용자 비중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의 여성종사자 비중은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여성종사자 비중이 약 46%선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범사업참여업체와 본사업참여업체 간 여성종사자 비중을 비교하면 본사업참여업체의 여성종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범사업 당시 여성종사자 비중이 적은 업종에 상대적으로 업종제한이 집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이 가능하지만 현재의 자료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여성종사자 변화 비중을 살펴보면 시범사업참여업체의 경우 2년 사이 여성종사자 비중이 지난 3년 사이 약 4%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본사업참여업체들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여성종사자 비중이 38~40%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40>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 여성종사자 비율

(단위: %, 명)

신청시기	2016년	2017년	2018년
2017년	0.30(612)	0.33(738)	0.34(727)
2018년 1월~5월	0.39(271)	0.40(300)	0.38(317)
2018년 6월 이후	0.38(7,563)	0.39(8,716)	0.40(9,295)

제 4 장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현장진단을 위한 심층면접 결과 (질적 분석)

제1절 청년고용장려금사업 관련 FGI 추진 현황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FGI 개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의 목적은 중소기업에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이 이러한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을 운영하는 고용센터 상담사들, 고용장려금을 신청한 기업의 인사 담당자, 참여 기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점검을 위한 심층면접 인터뷰는 이 사업의 운영현황 및 정책실효성을 점검하고, 이 사업 실행과정에서의 장애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을 분석하는 데 활용되었다.

먼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중소기업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고용장려금이 청년채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 사업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해 점검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청년추가고용장려

금사업을 집행하는 고용센터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에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운영현황과 실적에 대한 평가, 사업 운영과정의 애로사항과 운영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의 운영현황에 대한 계량분석과 심층 인터뷰 등 질적인 분석을 토대로 청년고용장려금사업의 운영현황에 대한 점검과 함께 향후 고용효과 증대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점검을 위한 심층면접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한 중소기업(5개), 중견기업(2개) 등 7개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고용센터(3개 지역)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담당자 및 센터 소장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표 4-1〉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FGI 대상

구분	지역	업종	근로자 수	장려금 신청	인터뷰 대상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신청기업	서울	모바일쇼핑 앱 개발	51명	9명	과장
		소프트웨어 개발	228명	6명	팀장, 팀원
		자동차 부품 제조업	298명	2명	과장
		자동차 판매 및 정비	498명	77명	팀장
		의약품 제조업	2,080명	90명	과장, 노무사
	유가공품 제조업	2,100명	90명	차장, 사원	
	부산	등산용품 제조업	340명	3명	팀장
고용센터 담당자	서울	관악고용센터	고용센터 팀장 1명, 상담사 1명		
		서울고용센터	상담사 1명		
	부산	부산고용센터	부산북부고용센터 소장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FGI 주요 질문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 청년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 만족도, 장기근속 가능성(또는 이직 가능성),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 청년고용장려금사업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신청 중소기업의 신청 시 경영상황, 신청 배경, 신청 과정 등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청년채용 이후 중소기업의 경영실적 등 인력증원의 성과 및 만족도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 근로자들의 초임 임금수준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지원금(1인당 900만 원)이 없었다면 채용을 늘리지 않았을 것인지?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신청절차, 심사절차,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운영 또는 지원금 관련 개선사항은 없는지?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의 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담당 고용센터 상담사(주무관, 팀장)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실적, 신청절차, 심사절차, 지원금 지급 등 운영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실적 변화는 어떠한가? 2017년 시범사업과 2018년 본사업, 6월 이후 추가고용장려금 신청 실적의 변화는 어떠한가?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추진 과정에서 신청 및 심사절차에 장애

요인은 없는가?

- 중소기업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가?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는 없는가?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과 관련해서 중소기업들이 신청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의 정부 지원금(1인당 900만 원)에 대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운영과정에서 고용센터의 가장 큰 애로 사항(운영절차, 지원금 지급 등)은 무엇인가?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의 취지를 살려서 청년 취업지원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또는 운영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제2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FGI를 통해 본 고용효과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신청 현황 추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현황은 2017년 시범사업 때는 성장유망업종 해당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신청기업이 많이 탈락해서 실제 장려금 신청이 많지 않았으나, 2018년 6월부터 전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 이후 장려금 신청이 급증하고 있어 2018년 고용센터의 신청접수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은 2017년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 시범사업에서는 성장유망업종을 신청자격요건으로 하면서 성장유망업종 해당 직무에 청년을 채용해야만 장려금 지급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초기에 장려금지원을 신청한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탈락을 해서 실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이 승인된 중소기업이 많지 않았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은 2018년 1월부터 성장유망업종의 전후방 산업까지 신청대상을 확대하였으나, 여전히 장려금 신청건이 많지 않았다.

2018년 6월부터는 장려금신청 대상기업을 전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장려금 지원기준도 조정하면서(30명 이상 1명, 100명 미만 2명, 100명 이상 3명), 1인당 연 900만 원으로 증액된 지원금 규모에 따라 신청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 고용센터의 경우 올해 목표가 3,438명인데, 10월 말 현재까지 75.86%의 달성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정도 추세면 올해 연말까지 우리 고용센터의 목표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서울고용센터 상담사)

2017년 시범사업 시기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이 알려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는데, 2018년 본사업으로 전환되고 사업이 확대되면서 많은 홍보가 이루어졌다. 올해부터는 관할 구역 내 작은 사업장에도 공문을 보내고 있고, 스타트업들도 알고서 찾아온다. 그리고 중소기업 업종별 모임에서도 많이 홍보가 이뤄지면서 이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모르는 기업은 거의 없는 것 같다.(관악고용센터 상담사)

올해도 5월 말까지는 우왕좌왕하면서 신청건수는 얼마 안 됐다. 6월 이전에는 지금의 10분의 1 정도였다. 6월 이후에는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신청 문의도 많고, 실제 신청건수도 많아지고 있다.(서울고용센터 상담사)

올해 6월 이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이 증가한 것은 지원대상 기업이 확대되었고, 지원기준도 완화한데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많이 홍보가 되면서 가능했던 것 같다.(관악고용센터 상담사)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의 청년고용 촉진효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구직 청년(15세~34세)들의 채용을 확대하도록 지원하는 장려금사업이다. 이 사업의 취지는 중소·중견기업이 장려금 지원을 통해 더 많

은 청년을 채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취지에 따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청년 추가채용을 촉진하는 역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제도를 활용해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인력을 채용했거나, 추가 채용을 망설이다가 청년고용장려금 지원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추가채용을 결정하는 식으로 청년 고용촉진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우리 회사는 2017년 말 직원이 357명에서 2018년 11월 현재 498명으로 증가했는데, 이 과정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활용해 최초로 인사팀이 생각한 규모보다 많은 인원을 채용하였다. 최근 신규채용을 늘리면서 무리한 사업확장에 대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팀에서는 신입을 이렇게 많이 뽑을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영진에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더 뽑자고 결정했다. 우리 회사의 고졸 신입사원 연봉은 2,220만 원 수준인데, 1인당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연간 지원액(900만 원)은 신입사원 연봉의 40% 수준이라서 이 제도 덕에 추가 채용을 할 수 있었다.(자동차 부품회사 인사담당자)

우리 회사는 직원이 51명인 스타트업 기업이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9명을 채용해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을 했다. 우리 회사는 사업이 확장되고 있어서 연간 10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을 세웠다.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라서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채용장려금을 준다고 하니 부담 없이 채용을 할 수 있게 됐다. 우리 같은 스타트업에서는 인건비 대기도 힘든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상거래 앱 개발업체 인사담당자)

중소기업에서는 신규채용에 대해 부담이 많다. 우리도 올해 신규채용을 하면서 솔직히 많이 망설였다. 정부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해 준 다니까, 신규채용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은 줄어들었다. 고용장려금이 이렇게 채용을 망설이는 기업에 채용을 결정하는 효과도 있는 것 같다.(홈쇼핑 앱 개발업체 인사담당자)

중견기업이나 규모가 큰 중소기업에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이 추가고용을 촉진하는 효과보다 인건비 지원을 받아서 경영에 보탬이 된다는 반응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을 받는다 고 해서 추가고용을 한 경우보다는 인건비 지원을 통해 경영에 보탬이 될 목적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한 경우가 더 많았다.

우리 회사는 공채로 신입사원을 뽑는데, 올해 신규채용도 공채 절차를 거쳐 했다. 올해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입법이 시행되면서 작년보다 현장직원을 더 많이 채용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을 받아서 신규채용을 늘리지는 않았지만 장려금 지원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데 보탬이 되었다.(유가공업체 인사담당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업이 받는 거니까, 기업으로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는 근로자한테 주는 거라서 이직을 줄여 새로 뽑는 채용 비용을 줄이는 간접 고용의 효과를 누리지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업이 직접 받는 것이기에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더 유인효과가 크다.(소프트웨어업체 인사담당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을 실제 집행하고 있는 고용센터 상담사들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이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청년(15세~34세) 추가고용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다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라서 장기적으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원금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장려금을 계속 받으려고 하는 중독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지원금액이 높기 때문에 스타트업 회사같이 임금수준이 낮고, 인건비 때문에 채용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에서는 채용 촉진 효과가 있다.(관악고용센터 상담사)

기업 쪽에서 전화를 받아보면, 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제도를 염두에 두고 청년 몇 명을 채용했는데, 지원이 가능하냐고 묻는 경우가 있다. 어쨌

든 이 사업을 신청할 생각으로 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장도 꽤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임금수준도 낮기 때문에 신규 채용 근로자 임금지급의 절감 정도를 지원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장려금을 받아서 신규 채용을 늘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서울고용센터 상담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들 중 일부 중견기업에서는 최근에 청년채용이 늘어나 추가고용장려금을 받고 있지만 실제 추가고용 효과는 거의 없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중견기업은 추가고용장려금을 인건비 보전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회사는 직원이 2,000명 정도 되고, 고용이 안정돼 있는데다 임금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아서 매년 공채에서 입사 경쟁률이 100 대 1을 넘었다. 올해 공채를 통해서 신규 채용을 100명 넘게 했고, 매월 6,700만 원(90명 분)이 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고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있어서 더 추가 채용을 한 것은 아니지만, 고용장려금 지원이 신규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 이 제도로 인건비 부담이 일정하게 줄었고, 심리적인 부담도 줄었다고 봐야 할 것 같다.(제약업체 인사담당자)

3. 스타트업과 중견기업 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고용효과 차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 추가고용 1인당 1년에 900만 원, 한 달 지원금이 75만 원 정도 수준이다. 이러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중소기업의 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고용촉진 효과는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이나 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고용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이러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수준에 대해 기존의 정부 고용지원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만족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 기존에 받던 정부 지원금을 반납하고, 청년추가고용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채용 증가 효과는 초임수준이 낮고 경영상황이 불안정한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에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초임수준이 높고, 경영이 안정돼 있는 중견기업에서는 채용증가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한 달에 75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꼴인데, 이 정도면 스타트업 회사 같은 데서는 임금의 절반 정도를 지원해주는 수준이다. 그만큼 채용 촉진 효과가 높을 수 있다.(관악고용센터 상담사)

우리 회사는 자동차 정비분야에서 신규채용을 많이 해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했다. 고졸 정비직 신입사원 연봉은 2,220만 원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초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정도 된다. 그만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이 신규채용을 늘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자동차 정비업체 인사담당자)

우리 회사는 스타트업 중소기업인데 신입사원 연봉이 3,000만 원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0%가량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으로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전자상거래업 개발업체 인사담당자)

우리 회사는 직원 2,000명의 중견기업인데, 대졸 신입사원 연봉은 4,200만 원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금이 대졸 초임 대비 21%가량 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으로 채용규모를 늘리지는 않았지만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경영에 도움이 되었다.(제약업체 인사담당자)

정부는 2018년 6월 1일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였다.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인 중소기업의 채용확대를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대기업과 비슷한 수준인 일부 중견기업의 경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의 실제 청년 채용 확대 효과는 낮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서 어려운 중소기업이 도움을 받고 청년들을 채용하면 좋은데, 그런 취지와 목적이 100% 다 이뤄지기 어렵다. 사실 경영상황이 좋은 큰 기업들은 안 받아도 신규 채용이나 경영에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채용장려금을 안 받아도 되는 기업이 장려금을 받아가면 정부는 돈을 주고도 욕을 먹을 수 있다.(전자상거래 앱 개발업체 인사담당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어떻게 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신규 채용에 따른 경영부담을 줄이는 데 유용한 제도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대기업 인건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오히려 중소기업에 더 필요한 제도다.(유가공업체 인사담당자)

고용센터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담당하는 상담사들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고용촉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이나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대기업과 맞먹는 중견기업에는 지원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은 실효성이 낮은 반면, 어려운 여건의 중소기업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을 하는 것이 사업 취지에도 맞다고 지적하고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진짜 지원해줘야 하는 곳은 영세사업장이다. 중견기업은 지원을 안 해도 청년들이 가고, 지원을 안 해도 필요한 인원을 채용하는 곳이다. 중견기업은 대기업이나 마찬가지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추진실적에는 도움이 되는데, 이 지원금의 진짜 목적을 생각한다면 영세사업장을 도와줘야 하고, 그런 곳의 신청이 많이 들어오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서울고용센터 상담사)

어차피 중견기업들은 청년을 채용할 필요가 있을 때 자기들이 필요한 인력을 뽑는다. 청년을 채용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정부가 거기에다가 돈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다.(관악고용센터 상담사)

반면에, 일각에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으로 청년들이 괜찮은 일자리에 가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에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청년들은 아무래도 고용이 안정되고, 근로조건이 좋은 중견기업에 가기를 원한다. 정부가 청년고용장려금사업을 하면서 영세·스타트업에만 보내야 할 것인가? 중견기업 정도는 보내야만 이 청년들이 계속 다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대상에 중견기업을 넣을 필요가 있다.(관악고용센터 상담사)

4.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연계효과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을 신청한 기업에서도 청년 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두 개 사업을 연계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현장 심층 인터뷰에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을 신청한 중소기업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사업 간 연계효과가 낮은 이유는 일차적으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신청요건이 2018년 말에 비해서 인력증원(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사업장 중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많지 않은 데 있다.

우리 회사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80명이 가입했는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은 6명에 불과하다. 2018년 입사자가 57명에 달하고, 대부분 청년들을 채용했지만 퇴사자가 많아서 작년 말에 비해 순증 인원은 7명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퇴사자가 많은 달에는 장려금 신청자 수가 더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전자상거래 앱 개발업체 인사담당자)

우리 회사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는 있는데, 퇴사자도 있어서 순증 인원이 많지 않다. 해당 월에 순증인원이 충족되는 달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달도 있다. 그래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을 아직 못 하고 있다.(소프트

웨어 개발업체 인사담당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장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연계 못 하는 이유로 가장 많은 게 지난해 말 대비 인원 증가가 없어서 그렇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장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못 하는 이유는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가 많다.(관악고용센터 상담사)

또 한편으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청년공제 가입 신청 기간 중 권고사직이 있을 경우 가입이 안 되도록 하는 신청요건이 있는데, 이 규정에 걸려서 두 사업 연계가 안 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청년공제사업 신청요건에서 권고사직 사업장 제외 요건은 2018년 6월부터 해제되었음)

올해 초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여부를 알아봤는데 인위적인 고용조정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신청을 안 했다. 우리 회사는 대규모 구조조정은 아닌데, 권고사직이 한 명 있었다. 그래서 청년 신규채용 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느냐고 문의해 왔을 때 가입이 어렵다고 답변해 줬다.(계약업체 인사담당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청자격이 까다로웠다. 해당 월에 권고사직이 있으면 가입이 안 된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공채에 합격해서 올해 1월 입사한 신입사원이 있었는데 이 분들은 혜택을 못 받았다. 현장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 그런 분들에게는 회사가 자격요건이 안 돼서 못 한다고 하면서 양해를 구했다.(유가공업체 인사담당자)

제3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운영과정의 애로사항 분석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에 대한 인지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요자인 중소기업에서 이 제도를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인지도는 2018년에 많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 시범사업을 할 때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이 알려지지 않아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2018년 본사업으로 전환되고 나서는 언론 등에서 많은 홍보가 이루어지면서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용센터 관내의 중소기업 사업장에는 모두 공문을 보내고 있고, 중소기업 업종별 단체에도 홍보를 하고 있다. 작은 중소기업들도 이제는 모르는 기업은 별로 없는 것 같다.(관악고용센터 상담사)

중소기업에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에 대해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거나,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운영기관에서 소개를 받거나,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알게 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인지하고 최종적으로는 고용센터의 상담사에게 문의를 해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회사는 작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있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기관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제도가 있으니 한번 신청해보라고 해서 알게 되었다. 바로 고용센터에 문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다.(온라인 상거래 앱 개발업체 인사담당자)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장이 혼자 인사관리까지 하는 경우도 있

어서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인사담당자가 한 명이다 보니 신청절차가 까다로워 못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대상임에도 못 하는 경우는 몰라서 안 하는 경우와 신청절차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워서 못 하는 경우다. 이런 것 때문에 사장 혼자서 인사관리를 다 하는 곳은 여력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서울고용센터 상담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이 간단해 보이지만, 작은 사업장에서는 관련 서류를 잘 추려서 내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영세사업장이 그렇다. 그래서 그런 사업장에서 많이 신청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영세 중소기업에서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서울고용센터 상담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이 많이 알려지면서 2018년부터는 중소기업으로부터의 관련 문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센터 상담사들에게 들어오는 상담은 주로 장려금 지원 신청 절차에 대한 문의가 많고,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지원대상이 안 되는 경우 항의성 문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항의전화는 왜 자기들 업종은 해당이 안 되느냐는 것이 많다. 성장유망 업종에서 빠져 있는 동물병원이 대표적이다. 요즘 반려견도 많이 키우는데, 자기들은 왜 지원대상이 되지 않느냐는 항의가 있었다.(서울고용센터 상담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은 올해 초에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우리 회사도 거기에 해당되는지는 생각을 못 했다. 그래서 인원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올해 여름에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에 속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 올해 6월부터 대상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는 고용부 공지사항을 보고 알아보기 시작했다.(자동차 부품제조업체 인사담당자)

일부 스타트업 중소기업에서는 중간수수료를 챙기려는 컨설팅업체로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소개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런 컨설팅업체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독자적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작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장려금 신청을 대리해주겠다고 하면서 중간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회사는 2017년 말 컨설팅업체로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을 소개받고 관련 정보를 얻었다. 컨설팅업체에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소개하면서 자기들이 대해해 주면 수수료를 연 500만 원 정도 달라고 이야기 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서류 편법을 사용하면, 자기들이 500을 받아도 업체에 돌아가는 돈이 더 많다고 했다. 굉장히 큰 조직 같았다. 변호사도 있고 회계사, 노무사도 다 있으니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게 대행해 해주겠다고 했다. 다행히 우리는 컨설팅업체의 요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지역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서 장려금을 신청하게 되었다.(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인사담당자)

고용센터 상담사들은 중소기업 인사담당자가 아니라 브로커들로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에 대한 문의 전화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브로커들은 부정수급을 조작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은 보험 같은 걸 묶어서 기업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업무를 대리하거나, 건수에 얼마 등과 같은 형식으로 대신해 주기도 한다.(관악고용센터 상담사)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준비서류 및 절차 관련 애로사항

중소기업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년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2017년 시범사업 시기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승인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사업주확인서, 근로자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는 월별임금대장과 급여이체내역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추가고용장려

금을 신청한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제출서류가 복잡하고 인사담당자가 1명이거나 할 때는 서류준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직원이 51명으로 스타트업에서는 나름대로 입지를 굳히고 있는 곳이지만 인사담당자는 사실상 나 혼자이다. 주변에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에서는 사장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곳도 있다. 이렇게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신청서류를 만드는 것도 큰 부담이다. 지금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할 때 임금대장과 급여이체내역서를 우편으로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있다. 임금대장의 경우 전체 직원 임금대장을 뽑은 다음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직원들은 일일이 삭제한 뒤에 출력해서 이것을 우편으로 보내고 있는데, 이것을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온라인 상거래 앱 개발업체 인사담당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과 관련해서 회사 인사담당자는 할 일이 상당히 많다. 이렇다 보니까 인사담당자들이 이런 사업 참여를 꺼리는 곳도 있다. 내가 아는 다른 기업의 인사담당은 귀찮아서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인사담당자)

우리 회사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90명분을 신청했다. 90명에 대한 근로자 확인서, 임금대장 등 지급 대상 근로자 관련 서류를 일일이 제출해야 하는데 우리 회사는 공장이 여러 군데여서 일이 많다. 초반에 신청서류를 준비할 때는 현장에 있는 인원이 많아서, 각 공장 인사팀하고 연락해서 각종 서류 확인서 취합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지금도 각 공장에서 월 단위로 그 인원을 다 확인하는 게 힘들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해야 한다.(유가공업체 인사담당자)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관련 신청서류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들에 대해서 서류를 간소화하거나, 고용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은 사업장에서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고용센터에서 바로 확인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의 절차 간소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은행이체내역서의 경우 한 명씩 지급내역 뽑기가 힘들어서, 주무관과 협의하에 대량이체내역서로 대체해서 보내고 있다. 그것처럼 개인 임금대장도 엑셀로 추출해서 보내는 방법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유가공업체 인사담당자)

사실상 한 번 신청하면 그 직원이 퇴직하지 않는 한 계속 가는 사람인데, 임금대장이나 은행이체내역을 매번 제출하는 것보다는 고용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굳이 제출하지 않는 것도 방법 같다.(전자상거래 앱 개발업체 인사담당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은 별도의 위탁운영기관을 두지 않고,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중소기업의 신청을 직접 확인·점검한 뒤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체계에서 영세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서류 준비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위탁지원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처럼 위탁운영기관에서 모든 것을 대행해 주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청 관련 상담이나 서류준비 등과 같은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위탁 지원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인사담당자가 1명인데, 혼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느라 행정적인 부담이 많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위탁운영기관에서 많이 도와준다.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는 편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신청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중간에 위탁운영기관이 있어서 상담도 해주고, 제도가 바뀌면 홍보도 해주고, 행정부담도 일부 덜어주면 좋겠다.(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인사담당자)

3.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관련 지침 변경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은 2017년 시범사업에 이어 2018년에 본사업으로 이어졌고, 2018년 6월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확대하였다. 이렇게 사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지원금액, 지원대상 기업 등 관

런 지침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2018년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내려보낸 지침만 해도 1월, 6월, 7월, 8월 등 4차례나 된다. 여기에 일부 지침 관련 해석사항은 고용센터 상담사가 고용부에 이메일로 문의한 것에 대한 회신을 전국 고용센터에 전파하는 방식으로 내려왔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도 고용센터에서 청년고용장려금사업을 맡은 상담사들은 고용부 본부에서 내려온 공식 지침에 더해 이메일로 내려온 해석까지 챙겨서 공무를 해야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고용센터 상담사들이나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지침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도 어느 지침을 근거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으며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지금까지 고용센터에서 고용서비스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단기간에 사업 실행 관련 지침을 이것저것 고친 사례가 없다. 올해에 내려온 지침만도 여러 개여서 우리 상담사들도 헷갈릴 때가 많다.(관악고용센터 상담사)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의 문의도 1월 지침 보고 전화하는 사람, 시범사업 지침 보고 전화하는 사람 등 다 혼재돼 있다. 일일이 설명을 다 해야 하고, 최종지침을 다시 설명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너무 힘들다, 왜 이렇게 어렵냐고 한다.(관악고용센터 상담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의 신청대상 기업, 신청금액과 관련한 기준 변경으로 혼란스러워 하는 사례로 2018년 3월 15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 기준이 변경된 것을 들 수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은 2017년 시범사업 때부터 2018년 3월 15일까지는 청년 추가고용 3명(2+1) 채용 시 1명분의 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하였고, 2018년 3월 15일 이후부터는 청년추가고용 1명당 추가고용장려금을 매월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 측에서는 이러한 지급기준과 절차의 변경에 따라서 신청 시기 별로 장려금 신청기간과 지원금 신청도 달리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대상

과 지원금 기준을 변경하면서 현장에서는 언제부터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9명에 대해 신청하고 있는데, 2018년 초에 신청한 사람들과 올해 상반기에 신청한 사람들이 신청 요건이 달라서 시범사업(2+1) 때는 3개월마다 한 번 신청을 하고, 올 상반기부터는 매월 신청을 하고 있다. 시범사업에서 2+1제도가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겨우 이해하고 나니까 또 내용이 바뀌었다. 내용이 바뀌면 같이 통일해 주면 좋은데, 소급 적용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 때 신청한 것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올해 상반기에 신청한 것은 매달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지금은 정리가 됐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엄청 헷갈렸다.(온라인 상거래 앱 개발업체 인사담당자)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규정들이 계속 바뀌었다. 지원금만 해도 작년에는 3명 고용했을 때 3년에 2,000만 원씩 지원했는데, 올해 3월 15일 이후부터는 3년에 2,700만 원으로 늘었다.(아이뱅크 인사담당자)

이러한 잦은 지침변경에 대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지침이 변경될 경우 관련 정보를 중소기업에 빠르게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에 대한 지침이 변경되면 관련 정보를 미리 배포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하나만 하는 게 아니어서 지침들이 바뀔 때마다 헷갈린다. 특히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나서야 고용센터에 문의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지침 변경을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건 고용센터에서 미리미리 알려주면 좋겠다.(유가공업체 인사담당자)

2017년 시범사업 때부터 2018년 하반기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운영과 관련해서는 변경된 지침은 2018년 3월 15일 기준으로 지원대상 기준과 지원금액이 변경된 것 이외에도 근로계약서상의 수습기간 조항의 해석, 시용 재학생 지원기준, 장려금 신청 근로자 수 산정기준, 지원금 신

청 시점 산정기준, 고용지원금 중복지원 금지범위기준 등에서 다양한 지침 해석 및 지침 변경이 이뤄졌다.

(근로계약서의 수습기간에 대한 해석) 고용센터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은 정규직 채용시점인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조항이 명시돼 있을 경우, 이 수습기간을 정규직 채용기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해석상의 논란이 제기되었다. 수습기간을 정규직 채용 전 단계인 ‘시용’의 개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근로계약 체결 후 업무수행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일정 기간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에 따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근로계약서 내용 중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는 업무 적격성 판단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고자 한 것으로 정규직 채용여부에 대한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계약으로 판단함으로써 정규직 채용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 * 수습: 확정적 근로계약 체결 후에 근로자의 작업능력, 사업장에서의 업무능력 훈련을 위한 기간
- * 시용: 근로자의 직업적성이나 업무능력의 평가를 위해 본채용 또는 확정 전 근로계약을 유보한 채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기간

예전에는 수습기간 조항이 있더라도 정규직으로 뽑으면 된다고 했고, 입사일 기준으로 정규직이라 판단해 지원신청을 받았다. 그런데 고용부 본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이후는 수습기간 조항이 시용의 개념처럼 정규직 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면, 수습이 아니고 시용으로 봐서 시용계약기간에는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관악고용센터 상담사)

(총근로자 수 산정방식) 2017년 지침에는 12월 말에 근로자 수가 없으면 지원 제외였으나, 2018년에 변경된 지침에서는 2017년 말에 근로자 수가 없다고 해도 연평균으로 나눠서 1명 이상이거나 5명 이상이면 장려금을 줄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지금은 총근로자 수를 산정하기 위해서 월별 인원을 전자계산기로 두드려 모두 합산한 뒤에 평균을 구해서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고 있다.(관악고용센터 상담사)

(장려금 지원 기준 시점) 성장유망업종의 경우 2017년 시범사업 시의 지침에는 처음으로 직원을 뽑아 사업장이 성립하게 되면 월말 근로자 기준으로 그 이후에 증가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였으나, 현재는 처음 뽑은 날을 기준으로 인원이 증가하면 지원하도록 변경하였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현재는 5인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변경하였다.

고용센터 상담사들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이 들어오면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기준일자를 확인하고, 지원금 계산하는 게 복잡하다. 중소기업에서는 왜 안 주냐고 난리고, 그렇다고 잘못 지급하면 나중에 환수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다.(관악고용센터 상담사)

(정부 지원금 중복수혜 금지기준) 중소기업에서 기존에 고용 관련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을 경우 이전에는 새로운 정부 지원금 지급이 안 됐으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에 관련해서는 이전에 받던 지원금을 반납하고 지원금 규모가 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갈아타는 게 가능하도록 기준을 변경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자기들에게 필요한 지원금을 먼저 신청해서 받고 있다가, 뒤에 더 좋은 게 있으면 바꾸고 싶어 한다. 이전에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전환해 주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고용부가 지침을 통해 기존 지원금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다. 최근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해 월 60만 원 받아 오던 사업주가 대체인력 지원금 다 반납할 테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바꿔 달라고 했다. 이전 방침으로는 법적 안정성 문제로 인해서 안 됐다. 그런데 7월에 본부에서 이 사업장에 대체인력 지원금 돌려받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주려는 지침이 내려왔다.(관악고용센터 상담사)

(재학생 지원 방침)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으나, 현재는 대학 재학 중인 자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마련해 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때부터는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재학생 기준을 이렇게 적용한 적은 없었다. 그 전에는 학생은 실업자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일관적으로 판단했었는데, 그 일관성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에서는 변경되었다.(관악고용센터 상담사)

제4절 청년고용장려금사업 운영개선 제안사항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시기에 따른 지원금액 기준의 통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추진과정에서 2017년 시범사업 때부터 2018년 3월 15일까지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명 채용(2+1) 기준 1명의 인건비로 2,000만 원을 지원한 반면, 2018년 3월 15일 이후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1명부터(30인 미만 1명, 100인 미만 2명, 100인 이상 3명)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1인당 연 900만 원(3인 2,7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제도가 변경되었다.

이러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제도 지원금액 기준 변경으로 2018년 3월 15일 이전 신청기업은 매월 기준 55만 5,000원을 지원받는 반면, 2018년 3월 15일 이후 신청기업은 매월 기준 75만 원을 수령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지원금액의 차이는 같은 중소기업 내에서도 신청 시기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 중소기업 간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한 중소기업들 중에는 지원 신청 시점을 조정해 3월 15일 이후 입사자로 변경해 월

75만 원을 지원받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금액이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지면서 2018년 3월 15일 이전에 신청한 중소기업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센터에서도 이러한 중소기업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새로 만들어진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증액되면서 오른 금액이라고 설명은 하는데, 지난해부터 올 초에 신청한 중소기업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관악고용센터 상담사)

이러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지원금액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지원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2년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감안하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금액을 2018년 3월 15일 이후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시 기업 현장 확인 절차 강화 필요성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지침에 따르면 고용센터는 중소기업에서 장려금을 신청한 사업주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사업기간 중 1회 이상의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센터 상담사들의 업무과중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현장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시범사업 기간에는 고용센터에 외부전문가와 고용센터 직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기에 허위 신청을 걸러낼 수 있었으나, 2018년 6월부터 지원 기준을 낮추고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면서 고용센터 상담사들의 현장점검만이 허위 신청을 걸러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고용센터에서 현장점검을 나가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허위 신청을 하거나 실적을 부풀리거나, 기간을 늘리는 등의 문제 있는 신청 사

례들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고용센터 상담사들의 현장 점검에서 허위 자료 신청 또는 부정수급 시도 등 적발 사례는 다양했다.

- 2017년부터 일하던 직원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있다가 지원금을 받을 명목으로 2018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사례
-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다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을 위해 고용보험 취득신고 날짜를 2018년 1월 1일로 정정신고한 사례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인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2017년 말에 가족이나 지인들을 고용보험에 등재했다가 적발된 사례
-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에 사업장이 없거나, 빈 창고만 있는 유행사업장인 경우
- 이전에 일했던 직원이나 일하지 않고 있는 학생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시켰다가 적발된 사례
- 사업주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급여이체내역서를 조작해 실제와 달리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위장한 사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은 중소기업에게 현금지원을 하는 것인 만큼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고용센터 상담사들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을 신청한 중소기업을 반드시 찾아가서 현장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현장점검을 나가 보면 실제로 나올지 몰랐다고 하는 사업주들이 많다. 현장점검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주는 고용센터도 있고, 점검을 나가도 발견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 나중에 부정수급 문제가 나타날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관악고용센터 상담사)

후배한테도 최초에는 무조건 현장점검 나가라고 한다. 지금은 일이 많으니까 그냥 소홀히 넘어갈 수 있지만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지침에 따라 요건이 되는지를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서울고용센터 상담사)

3. 정부 고용지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일모아사업 신고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는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서 두 개 이상의 정부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으려는 기업을 청년추가고용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에는 고용안정조치 등에 대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 제26조의2(지원의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지원의 제한)에 따라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의 지급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본문의 고용유지조치를 의미)를 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제한된다.

고용부는 이러한 정부 고용지원금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고용지원금 지급 시 이를 ‘일모아사업’에 등재하도록 해서 공요지원금 중복지원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부의 ‘일모아사업’은 정부의 고용지원금을 모두 신고하는 게 아니라서, 중복지원 여부를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일부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고용지원금은 일모아 시스템에 연계되지 않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알려주지 않으면 고용센터 상담사들이 중복지원 현황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와 같이 명칭은 기술료 지원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인건비 지원인 경우도 있다. 이 제도는 산업부 연구개발(R&D)을 지원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인력(만 15~34세)을 신규채용할 경우 2년 연봉의 50%만큼 기술료를 감면받는 제도인데 사실상 인건비 지원인 경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센터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판단하기는 너무 힘들다. 명확한 기준과 이를 걸러낼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관악고용센터 상담사)

다른 부처에서 지원금 받는 게 있어도 허위로 서류를 내면 우리는 확인

을 못 한다. 일모아 시스템에도 안 뜨고, 사업주가 자료도 안 주면, 우리는 모른다.(관악고용센터 상담사)

고용센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을 담당하는 상담사들은 이런 고용지원금 중복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일모아사업’을 개편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지급하는 고용지원금을 모두 등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중복지원 여부를 걸러내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4.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담당자 정기 교육프로그램 운영 필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은 2017년 시범사업에 이어 2018년에 본사업이 시행되고, 2018년 6월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투입해 사업이 확대되면서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금 지급 기준 등 관련 지침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2018년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내려보낸 지침만 해도 1월, 6월, 7월, 8월 등 4차례나 된다. 여기에 일부 지침 관련 해석사항은 고용센터 상담사가 고용부에 이메일로 문의한 것에 대한 회신을 전국 고용센터에 전파하는 방식으로 내려왔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고용센터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을 맡은 상담사들은 잦은 변경으로 인한 복잡한 지침 내용으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고용부의 지침 체계화 및 기준 통일과 함께 이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을 담당하는 고용센터 상담사들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고용센터 상담사들은 본부와 고용센터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상담사들이 통일된 지침을 모르고 있으며, 상담사들이 상담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의 통일적인 집행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침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업무와 관련해서 혼란스러운 게 많으니까 연찬회라든지, 아니면 모일 수 있는 회의를 열어달라고 했는데, 너무 바빠서 못 한다고 했다. 그래서 Q&A 하나만이라도 내려달라고 하고 있다. 지금은 각자 처리하고 있는 현실이다. 새로운 고용센터 상담사들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관악고용센터 상담사)

제 5 장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제1절 청년고용장려금사업 운영 현황 및 사업체 특성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운영 현황

본 연구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실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 기업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월별 지급현황이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6월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구조적인 변화에 기인한 것임을 추측할 수 있는데 사업참여조건이 완화가 장려금사업 확대에 도움을 준 것을 알 수 있다.

업종별 사업 참여 특성을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종 참여사업장의 수가 크게 증가했고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참여 비중

이 줄어들어 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최초 설립 취지에 따라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성장유망업종을 대상으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같이 성장가능성이 높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사업체에 대한 지원이 많았을 것이지만, 2018년 6월부터 성장유망업종에 대한 지원요건 제한이 풀린 이후 다른 업종에 대한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 업종에 대한 지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음을 판단할 수 있고 현재 다양한 업종의 업체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지역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의 특징으로는 서울·경기지역 사업체의 참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2018년 1~5월과 비교 시 2018년 6~9월에는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그리고 울산지역 사업장 참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을 들 수 있다.

고용위기지역 내 업체들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를 살펴보면 2018년 6월 이후 이들 지역에서 참여사업장과 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별, 성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보다 남성 채용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청년 채용자가 20~34세의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18년 6월부터 9월까지의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장려금 지원사업장과 지원인원 모두에서 비성장유망업종의 비중이 1/4정도로 나타났다. 이를 사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5~29인 규모의 사업체와 5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에서 비성장유망업종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사업체 특성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제도 변화에 따라 표본을 나누어 분석했다. 전체 표본을 2017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 중 시범사업 참여집단과 2018년 1~5월 본사업에 참여한 업체, 마지막으로 2018년 6월 이후 본사업참

여업체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봤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기업의 종사자 수를 비교해 보면 2018년 1~5월 본사업지원업체의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범사업참여업체의 종사자 수가 그다음으로 나타났다. 규모의 차이에 대한 해석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제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2018년 1월~5월 본사업의 경우 시범사업지원업체에서 제한된 성장유망업종에 더해 전·후방산업 업종이 추가되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업체들이 사업에 참여했을 것이라 추측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2018년 6월 이후 참여업체의 규모가 가장 작은 것은 성장유망업종 제한이 사라져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체가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재무제표상 특징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지표에서 2017년 시범사업 때보다 2018년 본사업참여업체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시범사업참여업체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비중이 높은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의 업종별로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살펴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가 그렇지 않은 사업체보다 연구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공통적으로 청년층 고용촉진이라는 직·간접적인 목적을 지니는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 중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도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두 사업 모두에 참여하는 업체가 상시근로자 수, 사업 내 추가고용, 지원금액의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업체 업종을 세분화하여 알아본 결과도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지의 여부는 결론적으로 고용지표상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두 사업 모두 지원받는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클 가능성이 있고 이는 추가적인 고용여력이 높을 수 있

음을 알려준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 인원 평균 약정임금을 입사 당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본사업에 참여한 인원의 평균임금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18년 6월 이후 피고용자 임금이 그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참여에 따른 청년 근로자의 퇴직률을 확인해 보면 2017년 시범사업 참여인원 중 12.01%,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참여 인원 중 6.16%, 6월 이후 참여인원 중 6.37%가 2018년 9월 기준으로 퇴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범사업 참여인원의 퇴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입사일이 먼저이기 때문에 퇴사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2018년 6월 이후 참가자의 퇴사 비율이 2018년 1월부터 5월 사이의 참여인원보다 높은 이유는 사업 성격이 바뀌므로 인하여 참여하는 사업장의 배경 역시 변화가 있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며, 이것이 참여인원의 일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업종별로 확인해 보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 퇴사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의 고용효과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업시행 후 충분한 시간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 전후 고용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아, 여기서는 간접적인 고용효과를 살펴보았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고용변화 평균값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을 통한 추가고용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고용의 변화를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해 보았다. 분석결과 시범사업참여업체와 2018년 5월까지의 본사업참여업체의 경우 사업 내 추가고용의 수가 지난 5년 평균 고용변화보다 적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2018년 6월 이후의 본사업참여업체의 추가고용 인원의 수가 지난 5년 평균 고용변화보다 두 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와는 해석에 주의를 요하는데 먼저 구조적인 계량 분석이 아니므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로 인한 고용변화 차이가 유의미한지에 대한 해석을 펼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또한 청년추가고용장

려금 참여 이후 고용의 변화를 추정하기에는 그 기간이 너무 짧은 관계로 결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추가로 사중손실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초통계를 기반으로 한 고용변화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가 긍정적인 고용효과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과대평가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 이런 문제들은 차후 추가적인 고용지표가 확보되면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2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1. R&D 투자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대상 지원 확대 검토

본 연구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기업과 비참여기업 간 비교 분석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사업장들이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비중이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들의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특히 상대적으로 연구의 비중이 높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경우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연구개발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을 성장유망업종으로 제한했던 시범사업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다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의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중에서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높은 기업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의 취지를 감안하면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양적인 목표를 충족하는 단계가 되면, 그 이후부터는 성장이 유망한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통해 사업의 질적인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업의 질적인 제고를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중에서 연구개발 투자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지원 중소기업 기준 조정 필요성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 일자리 지원 대책 중에서 중소기업·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지원금액이 가장 큰 사업이다. 이러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중소기업의 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고용촉진 효과는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이나 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FGI에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으로 인한 채용 증가 효과가 초임수준이 낮고 경영상황이 불안정한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에서 높게 나타나 는 반면, 초임수준이 높고, 경영이 안정돼 있는 중견기업에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에 따른 채용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견기업의 경우 2018년 6월 이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가 허용되었는데, 일부 중견기업의 경우 매년 공채에서 입사지원 경쟁률이 높아(100 대 1) 채용에 어려움이 없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으로 특별히 추가 채용 확대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고용센터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일부 대기업과 유사한 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이 청년들의 중소기업 채용촉진이라는 애초의 목표에 집중하고 제한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이나 성장이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반면에 지불여력이 높고, 경영이 안정돼 있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이 없

더라도 채용에 어려움이 없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대기업과 유사한 수준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내는 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줄이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시기에 따른 지원금액 기준의 통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은 지원금액 기준 변경으로 2018년 3월 15일 이전 신청기업은 매월 기준 55만 5,000원을 지원받는 반면, 2018년 3월 15일 이후 신청기업은 매월 기준 75만 원을 수령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지원금액의 차이는 같은 중소기업 내에서도 신청 시기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 중소기업 간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지원금액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지원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1~2년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감안하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금액을 2018년 3월 15일 이후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시 기업 현장 확인 절차 강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지침에 따르면 고용센터는 중소기업에서 장려금을 신청한 사업주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사업기간 중 1회 이상의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센터 상담사들의 업무과중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현장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예산이 증액되고, 지원범위는 확대되고 있지만 고용센터의 담당 실무자는 증원이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현장 확인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중소기업 인사담

당자 대상 FGI에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급을 컨설팅해주겠다면서 실제로는 부정수급을 유도하는 소위 브로커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하는 길은 고용센터에서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는 길밖에 없는 실정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은 중소기업에게 현금지원을 하는 것인 만큼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고용센터 상담사들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한 중소기업을 반드시 찾아가서 현장 점검을 하도록 운영지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정부 고용지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일모아 사업’ 신고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는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서 두 개 이상의 정부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으려는 기업은 청년추가고용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러한 정부 고용지원금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고용지원금 지급 시 이를 ‘일모아사업’에 등재하도록 해서 정부의 고용지원금 중복지원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고용지원금은 일모아 시스템에 연계되지 않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알려주지 않으면 고용센터 상담사들이 중복지원 현황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고용지원금 중복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일모아사업’을 개편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지급하는 고용지원금을 모두 등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중복지원 여부를 걸러내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6.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담당자 정기 교육프로그램 운영 필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은 2017년 시범사업에 이어 2018년에 본사업

이 시행되고, 2018년 6월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투입해 사업이 확대되면서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금 지급 기준 등 관련 지침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고용센터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을 맡은 상담사들이 잦은 지침의 변경으로 인한 복잡한 지침 내용으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고용부의 지침 체계화 및 기준 통일과 함께 이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을 담당하는 고용센터 상담사들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17),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원사업 시행지침』.
 _____(2018),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원사업 시행지침』.
 _____(2018),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원사업 시행지침』.
- 금재호 외(2017), 『고용장려금 2차 개편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한국노동경제학회.
- 김상호 외(2009), 『고용창출지원금 효과성 제고방안: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및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을 중심으로』, 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 김진영(2015),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효과 분석』, 예산정책처.
- 이성희 외(2018), 『청년층 대상 직접일자리사업정책 심층평가』, 한국노동연구원
- KDI, 『일자리사업 전면개편 심층평가 연구』.
- Ayhan, S. H.(2013), “Do non-wage cost rigidities slow down employment? Evidence from Turkey”, *IZA Journal of Labor Policy* 2(1), p.20.
- Barza, R.(2011), “Essays in labor economics”, PhD dissert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 Caliendo, M., S. Kunn, and R. Schmidl(2011), “Fighting youth unemployment : The effects of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IZA Discussion Paper No.6222.
- Egebark, J. and N. Kaunitz(2014), “Do payroll tax cuts raise youth employment?”, IFN Working Paper No.1001.
- Eppel, R. and H. Mahringer(2013), “Do wage subsidies work in

- boosting economic inclusion? Evidence on effect heterogeneity in Austria”, WIFO Working Paper No.456.
- Kugler, A., J. Jimeno, and V. Hernanz(2002), “Employment consequences of restrictive permanent contracts : Evidence from Spanish labor market reforms”, IZA Discussion Paper No. 657.
- O’Leary, C. J.(1998),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active labor programs in Hungary”,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Technical Report No.98-013.
- Roger, M. and P. Zamora(2011), “Hiring young, unskilled workers on subsidized open-ended contracts : A good integration programme?”,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27(2), pp.380-396.
- Webb, M., A. Sweetman, and C. Warman(2012), “How targeted is targeted tax relief? Evidence from the unemployment insurance Youth Hires program”, Working Paper.

◆ 執筆陣

- 이성희(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유동훈(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청년층 노동시장정책 심층평가 : 고용장려금사업

- | | |
|---------|--|
| ▪ 발행연월일 | 2018년 12월 24일 인쇄
2018년 12월 28일 발행 |
| ▪ 발행인 | 배규식 |
| ▪ 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 대표 (044) 287-6080 Fax (044) 287-6089 |
| ▪ 조판·인쇄 | 고려씨엔피 (02) 2277-1508/9 |
| ▪ 등록일자 | 1988년 9월 13일 |
| ▪ 등록번호 | 제13-155호 |

© 한국노동연구원 2018 정가 6,000원

ISBN 979-11-260-0263-4